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현황 및 쟁점

2020. 12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이 상 엽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송 은 주 책임연구원

서 동 연 특수전문직(4급)

# 목 차

I. 서론 .....	9
II.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	11
1. 개요 .....	11
가. 과세방법 .....	11
나. 과세대상 .....	12
2. 과세소득의 산정방법 .....	14
가. 금융투자소득금액(또는 결손금)의 계산 .....	14
나.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산정 .....	24
다.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 .....	26
3. 세율 .....	26
4. 신고방법 및 납부절차 .....	27
가. 원천징수 .....	27
나. 예정신고 .....	29
다. 확정신고 .....	30
라. 그 밖의 관련 제도 .....	31
5. 특례규정 .....	33
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	33
나. 조세회피 방지규정 .....	35
6. 증권거래세 .....	35

Ⅲ. 주요국의 금융자산 양도 관련 과세제도 .....	36
1. 미국 .....	36
가. 개요 .....	36
나. 과세소득 산정 .....	38
다. 세율 .....	43
라. 신고방법 및 납부절차 .....	45
마. 특례규정 .....	46
바. 증권거래세 .....	49
2. 일본 .....	50
가. 개요 .....	50
나. 과세소득 산정 .....	54
다. 세율 .....	57
라. 신고방법 및 납세절차 .....	58
마. 특례규정 .....	60
바. 증권거래세 .....	62
3. 영국 .....	63
가. 개요 .....	63
나. 과세소득 산정 .....	65
다. 세율 .....	72
라. 신고방법 및 납세절차 .....	73
마. 특례규정 .....	75
바. 증권거래세 .....	87
4. 독일 .....	87
가. 개요 .....	87

나. 과세소득 산정 .....	90
다. 세율 .....	97
라. 신고방법 및 납세절차 .....	98
마. 특례규정 .....	100
바. 증권거래세 .....	100
IV. 국제비교 및 쟁점 .....	101
1. 국제비교 .....	101
가. 금융자산 자본이득 과세체계 .....	101
나. 기본공제 및 비과세·감면 .....	104
다. 손익통산 범위 및 이월공제 .....	106
라. 장기보유 및 특정계좌 과세우대 .....	107
마. 증권거래세 .....	108
2. 쟁점 .....	110
가. 기본공제 .....	110
나. 장기보유 특례 .....	111
다. 조세회피 방지규정 .....	113
라. 증권거래세 .....	113
참고문헌 .....	116

## 표 목차

〈표 II-1〉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	16
〈표 II-2〉 금융투자소득상품별 기본공제 .....	25
〈표 II-3〉 2023년 이후 금융투자소득세율 .....	26
〈표 II-4〉 금융투자소득의 지급기관 원천별 예정신고기한 .....	30
〈표 II-5〉 증권거래세율의 연도별 변화 .....	35
〈표 III-1〉 미국의 개인소득세 과세구간별 세율(2020년) .....	44
〈표 III-2〉 미국의 장기자본이득 세율(2020년) .....	45
〈표 III-3〉 금융상품 과세 개요 .....	53
〈표 III-4〉 일본의 양도소득세 세율 .....	58
〈표 III-5〉 일본의 NISA제도 개요 .....	61
〈표 III-6〉 NISA 계좌 이용 현황 .....	62
〈표 III-7〉 자본이득 연간 비과세 기준금액 .....	71
〈표 III-8〉 2008년 이후 자본이득세 세율 .....	73
〈표 III-9〉 자진신고(Self-Assessment) 신고·납부기한 .....	75
〈표 III-10〉 처분시점별 사업자공제(Entrepreneurs' relief) 한도 .....	79
〈표 III-11〉 독일의 종합소득세율 .....	98
〈표 IV-1〉 주요국의 금융자산 자본이득 과세체계 .....	103
〈표 IV-2〉 자본이득 기본공제 및 비과세·감면 .....	105

〈표 IV-3〉 자본손익의 통산범위 및 이월공제 .....	107
〈표 IV-4〉 장기보유 및 특정계좌 과세우대 .....	108
〈표 IV-5〉 주요국의 거래세 현황 .....	109



# I. 서론

-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함으로써 2023년 이후부터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전면 과세할 예정임
  - 금융투자소득이란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을 포함한 소득구분임
    - 즉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그동안 우리나라의 금융자산 과세제도의 장기적 개선방향으로는 이원적 소득세제(DIT, Dual Income Tax) 또는 종합과세의 강화 방안이 제시되었음<sup>1)</sup>
  - 2013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은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새로 도입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원적 소득세제에 가까운 방식이므로 형식적인 면에서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음
    - 이원적 소득세제는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근로 및 사업소득 등과 분류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금융투자소득에는 자본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및 배당 소득을 포함하여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의미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소득은 자본소득만 포함하고 이자 및 배당소득은 포함하지 않아 완전한 이원적 소득세제와는 차이가 있음

□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를 시행하면서 그동안 비과세되었던 주식 및 채권 양도차익

---

1) 홍범교·이상엽,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pp. 93~94

을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인 세부담 측면에서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 특히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 자본이득이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됨으로써 조세저항이 우려됨
  - 이에 따라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를 당초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과세대상 투자자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음
  
- 따라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에서는 금융자산 자본소득에 대한 주요국의 과세체계를 비교하고 주식 자본이득 과세와 관련한 향후 쟁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함
    - 연구범위는 개인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자본소득에 한정함
  
- 본 보고서는 서론인 제 I 장을 포함하여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 II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소득세제를 살펴봄
  - 제 III 장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금융자산 자본이득 과세제도를 소개함
  - 제 IV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조사대상국의 금융자산 자본이득세제를 비교하고 금융투자소득세제 도입의 기대효과 및 향후 논의가 필요한 쟁점을 제시함

## II.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 1. 개요

#### 가. 과세방법

- 우리나라는 2020년 개정세법을 통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모든 주식 및 증권, 파생상품 등의 양도 거래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임<sup>2)</sup>
- 금융투자소득의 특성상 이익이 다년간 누적되어 발생하고 금융투자 손실의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기존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금융투자소득을 별도의 분류과세 항목으로 신설함<sup>3)</sup>
  - 현행법상 주식 양도거래는 상장 여부, 대주주<sup>4)</sup> 여부에 따라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하며,<sup>5)</sup> 채권의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고 있음
  - 현재 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은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과 함께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 금융투자 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금융투자 상품별 과세방식을

2)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2(2020. 12. 29. 신설)

3) 「소득세법」 제87조의4 제1항(2020. 12. 29. 신설)

4) 대주주란 유가증권시장을 기준으로 지분을 1%(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를 의미함(2020. 4. 1. 이후 적용)

5) 현재 상장주식의 장외 거래 및 비상장주식 양도 시에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상장주식의 장내 소액주주거래는 과세 제외함

통일함으로써 투자결정의 왜곡을 방지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함

- 현행법상 금융투자 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가 불가하며,<sup>6)</sup> 금융투자 상품 별로 과세방식이 상이함<sup>7)</sup>

## 나. 과세대상

- 금융투자소득이란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으로,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을 의미함
  - 증권에는 채무증권·수익증권·파생결합증권·예탁증권·투자계약증권이 포함됨<sup>8)</sup>
  -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을 바탕으로 파생된 금융상품으로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sup>9)</sup>
    - 국내·외 주가지수<sup>10)</sup>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및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장외파생상품
    - 차액결제거래(Contact Fof Difference, CFD)<sup>11)</sup>

- 
- 6) 주식양도손익 내에서만 손익통산이 가능하며, 순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과 먼저 상제한 후 남은 손실금액은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 있음. 또한 모든 주식 및 금융투자 상품의 양도손실의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음
  - 7) 현행법상 주식 및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분배·환매의 경우 배당소득, 양도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형태(계약형·회사형) 및 상장 여부 등에 따라 비과세·배당소득·양도소득 등으로 과세되므로 금융투자 상품별 과세방식에 차이가 존재함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각호
  -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함)
  - 11)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매매차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신종 장외상품으로 아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2호, 2021. 2. 17. 신설)
    - (1)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
    - (2) 주식 등,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 집합투자증권, 주가지수 상장지수증권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

## II.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13

- 주식워런트증권(ELW)<sup>12)</sup>

-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이자·배당소득은 현행과 같이 종합과세하며, 이자·배당을 원천으로 하는 펀드 분배금도 현행과 같이 배당소득으로 봄

□ 금융투자소득금액의 범위에는 다음의 여섯 가지 소득이 포함됨<sup>13)</sup>

○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하 “주식 등 소득금액”)

- ‘주식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sup>14)</sup>에 따른 지분증권,<sup>15)</sup>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을 의미함

- 「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sup>16)</sup>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 관련 주식은 금융투자소득의 ‘주식 등’의 범위에서 제외함<sup>17)</sup>

- 상장주식 여부, 대주주 여부, 중소기업 여부 또는 국외주식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함

○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하 “채권등 소득금액”)

- ‘채권등’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채무증권,<sup>18)</sup> 증권예탁증권 중 채무증권과 관

12)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국내·외 주가지수에 따른 지수의 수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13) 「소득세법」 제87조의7; 동법 제87조의9부터 제87조의10; 제87조의14부터 제87조의16(2020. 12. 29. 신설)

14) 이하 본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본시장법」으로 기재함

15) 「자본시장법」상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유한책임·유한회사 및 합자·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함

16) 「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함

17)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으로 과세되며(2012. 12. 31. 이전 양도 분은 현행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 「소득세법」상 부동산 관련 주식은 현행규정과 동일하게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 2021. 2. 17. 신설)

18)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이란 국채·지방채·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함

런된 권리가 표시된 것과 이자 또는 할인액이 발생하는 증권을 의미하며, 대통령령에 따르면 조건부자본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및 어음은 채권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투자계약증권<sup>19)</sup>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하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과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이하 “집합투자기구<sup>20)</sup>소득금액”)
  - 파생결합증권<sup>21)</sup>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하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이하 “파생상품소득금액”)
- 다만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sup>22)</sup>
- 「공인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 이익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 2. 과세소득의 산정방법

### 가. 금융투자소득금액(또는 결손금)의 계산<sup>23)</sup>

-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이하의 두 가지 그룹으로 구분하여 계산 후 합산함
-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상장주식 등과 공모 국내 주식형펀드로 다음의 소득금액을 의미함

19)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다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함(「자본시장법」 제9조 제6항)

20)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는 신탁형, 조합형, 회사형, 사모투자전문회사(PEF)로 구분할 수 있음. 신탁형은 투자신탁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집합투자기구는 신탁형임. 조합형은 투자합자조합과 투자익명조합, 회사형은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유한책임회사가 있음.

21)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을 말함(「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

22) 「소득세법」 제87조의3(2020. 12. 29. 신설)

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9(2021. 2. 17. 신설)

- 국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금액
- 국내 주권비상장법인인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협회장외시장(K-OTC)을 통하여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금액
-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sup>24)</sup>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 외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함

□ 금융투자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익통산이 가능하며, 금융투자소득금액의 합계가 0보다 작은 경우 '금융투자결손금'에 해당함

○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과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이 모두 0보다 작은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금융투자결손금으로 함

○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과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 중 한 그룹의 금액이 0보다 작거나 모두 0보다 큰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금융투자소득금액(또는 결손금)으로 함

○ 파생상품소득의 경우 투자손실의 한도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결손금에 한도를 두고 있으며, 손실 인정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은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하지 아니함<sup>25)</sup>

- 손실 인정 한도는 ① 계약 체결 시 납입 한 위탁증거금<sup>26)</sup>과 ② 계약 종료 전 투자자가 납입한 금액으로서 손실 변제에 사용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sup>27)</sup>

□ 비과세·감면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결손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24)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4; 동법 제150조의26)

(1) 「자본시장법」상 증권집합투자기구(사모 집합투자기구 제외)

(2) 집합투자계약상 자산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 등으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2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0(2021. 2. 17. 신설)

26) 「자본시장법」 제396조 제1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을 의미하며,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의 수탁 시에는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위탁증거금을 받아야 함

27)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6(2021. 3. 16. 신설)

- 비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은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시 합산하지 않음
  - 감면대상 소득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은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시 합산함
- 금융투자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시 수입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르며, 소득별로 수입시기를 다르게 적용함<sup>28)</sup>
-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함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경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대금을 청산한 날, 환매·해지·해산 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로 함
  -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로 함
  -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그 손익이 확정되는 날로 함
    - 파생상품은 반대거래<sup>29)</sup>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사유를 통하여 손익이 확정됨

〈표 II-1〉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소득구분		수입시기
주식등 소득금액		대금을 청산한 날
채권등 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양도	대금을 청산한 날
	환매·해지·해산	이익을 지급받은 날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이익을 지급받은 날
파생상품 소득금액		손익이 확정되는 날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8 요약

28) 「소득세법」 제24조(준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8(2021. 2. 17. 신설)

29) 반대거래란, '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 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를 말함

### 1)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

-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함<sup>30)</sup>
  -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의 소득금액은 계좌별로 계산함<sup>31)</sup>
    - 같은 계좌 내에서 양도하는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봄
-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며, 양도일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sup>32)</sup>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름<sup>33)</sup>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sup>34)</sup>
    -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경우로서 상여,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시가
    -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 필요경비는 취득가액,<sup>35)</sup>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를 합산한 금액임<sup>36)</sup>

30) 「소득세법」 제87조의8(2020. 12. 29. 신설)

31)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의 소득금액은 계좌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을 법령상 명확하게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1(2021. 2. 17. 신설))

32)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를 의미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1)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3)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동법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제87조의27에 따라 동법 제100조를 준용함

34) 양도가액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을 준용함(「소득세법」 제87조의11, 2020. 12. 29. 신설)

35) 취득가액에는 취득원가와 취득부대비용(취득 시 발생한 소송비용 포함) 등이 포함됨

-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 또는 개별법을 적용하여 계좌별로 평가함<sup>37)</sup>
  - 자본적 지출에는 주식 취득 이후 소송비용 등이 포함되며, 양도비에는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됨
  - 취득가액은 실지거래대가액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등에 관하여는 기존의 법령<sup>38)</sup>을 준용함
- 기존 법령에 따르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함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함
  -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필요경비는 매매사례가액·환산 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필요경비개산공제(기준시가의 100분의 1)를 가산한 금액으로 함
-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sup>39)</sup>의 기준 평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함(의제취득가액)<sup>40)</sup>
- 금융투자소득 시행 전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하여 의제취득가액 규정을 마련함<sup>41)</sup>
  -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되는 주식은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국내 상장 주식 및 소액주주가 협회장외시장(K-OTC)을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 비

36) 「소득세법」 제87조의12 제1항부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3(2021. 2. 17. 신설)

37) 주식은 이동평균법, 채권은 개별법 또는 이동평균법(무신고시 개별법), 투자계약증권은 개별법으로 평가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3, 2021. 2. 17. 신설)

38)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근거는 「소득세법」 제97조를 준용함(「소득세법」 제87조의12 제3항)

39)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로 함

40) 「소득세법」 제87조의1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0조의14(2021. 2. 17. 신설)

41) 정부는 2022년까지의 비과세 효과를 유지함으로써 개정세법 시행 이전 세금을 피하려는 대량 매도를 막기 위해 2023년 전에 산 주식을 2023년 이후에 팔 때는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2022년 말로 인정해주시기로 함(자료: 『경향비즈』, 「[금융투자소득 Q&A] 과거 3년간 손실분 있다면, 이익에서 제하고 과세」, 2020. 6. 25.,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6251819001&code=920100#csidx2fb68de893a0a55ab85cef5dda786a1](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6251819001&code=920100#csidx2fb68de893a0a55ab85cef5dda786a1), 검색일자: 2020. 11. 19.)

상장주식을 의미함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평가액은 최종시세가액<sup>42)</sup>에 양도 주식 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함
- 주식 의제취득가액을 적용받는 주주는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주주가 아닌 주주를 의미함<sup>43)</sup>

## 2)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은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소득금액과 적격투자집합기구<sup>44)</sup>의 분배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sup>45)</sup>
-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소득금액이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으로 발생한 이익으로, 양도소득금액에서 각종 보수 및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sup>46)</sup>
- 주식형 ETF 및 상장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소득금액은 환매 시 기준가격과 매수 시 기준가격의 차이금액으로 함
  - 상장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이 아닌 실제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의 차이 금액으로 함
- 그 외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소득금액은 환매 시 기준가격과 직전 결산·분배 직후

42)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K-OTC 거래주식은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4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8(2021. 3. 16. 신설)

4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1)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2)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집합투자재산의 매매·평가손익 등은 유보 가능)

(3) 금전으로 위탁·환급(자산을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위탁가액·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함)

(4) 국세청에 매년 신탁재산 소득금액, 분배금, 유보금 내역을 신고

45) 「소득세법」 제87조의14 제1항(2020. 12. 29. 신설)

4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7 제1항, 제3항 및 제4항(2021. 2. 17. 신설)

기준가격의 차액에서 과세되지 않은 손익을 가감하여 계산함

-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이란 결산·분배 시 분배소득금액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보수 및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sup>47)</sup>
  - 주식형 ETF 및 상장 집합투자증권의 분배소득금액은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 중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 그 외 집합투자증권의 분배소득금액은 결산 시의 기준가격과 직전 결산·분배 직 후 기준가격의 차액에서 과세되지 않은 수익 등을 가감하여 계산한 금액임
- 다만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 전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소득금액 및 분배소득금액 계산 시에는 특례에 따른 기준가격, 실제 매수가격을 적용함(이하 '의제취득가액 등'이라 함)<sup>48)</sup>
  - 의제취득가액 등은 집합투자증권 종류에 따라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 가격 및 과세표준 기준가격, 2022년 직전 결산·분배 직후 또는 매수 시점의 과 세표준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정 산식에 따른 평가액<sup>49)</sup>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함

### 3)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회수하는 금전에서 지급하는 금전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 로,<sup>50)</sup> 파생결합증권의 양도소득금액과 분배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임<sup>51)</sup>

4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7 제2항 및 제5항(2021. 2. 17. 신설)

48) 특례에 따른 기준가격, 실제 매수가격의 자세한 산정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8(2021. 2. 17. 신설) 참조

49) 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9(2021. 3. 16. 신설) 참조

50) 대통령령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자세한 산정방법은 「소득세법」 제150조의19 및 제150조의20을 참조

-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은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분배금, 회수·지급한 금전의 가액 및 보수·수수료<sup>52)</sup>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sup>53)</sup>
  -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분배금, 파생결합증권의 상환·환매·양도·권리행사, 최종 거래일의 종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포함함
  
-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금액은 1증권당 양도소득금액에 양도 등이 발생한 증권 수를 곱한 금액에서 각종 보수·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1증권당 양도소득금액은 증권 종류별로 계산방법에 차이가 존재함
  - 상장지수증권(ETN)<sup>54)</sup>의 1증권당 양도소득금액은 상환 시 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주식워런트증권(ELW)<sup>55)</sup>의 1증권당 양도소득금액은 실제 매도가격(상환금액)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sup>56)</sup>
    - 다만 주식워런트증권(ELW) 행사 또는 최종 거래일의 종료로 소멸하는 경우 1증권당 양도소득금액은 기준가격, 행사가격, 전환비율, 매수가격 등을 고려하여 법정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함<sup>57)</sup>
  
- 파생결합증권 분배소득금액은 1증권당 분배소득금액에 분배발생 증권 수를 곱한

51) 「소득세법」 제87조의15; 동 법령 제150조의19(2021. 2. 17. 신설)

52) 위탁매매수수료 등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3 제4항)

53) 삼일아이닷컴, 「2020년 개정세법안(2020. 7. 22. 기획재정부 발표) 요약」, 2020. 9. 8., [http://www.samili.com/weekly/weekly\\_view.asp?idx\\_no=34260](http://www.samili.com/weekly/weekly_view.asp?idx_no=34260), 검색일자: 2020. 11. 20

54)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함

55)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함

5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9 제4항 제2호 나목(2021. 2. 17. 신설)

5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9 제4항 제2호 가목(2021. 2. 17. 신설)

금액에서 각종 보수·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 1증권당 분배소득금액은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을 의미함
- 다만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유한 상장지수증권(ETN)에는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며,<sup>58)</sup> 의제취득가액은 법정 산식에 따른 평가액<sup>59)</sup>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함

#### 4) 파생상품 소득금액

- 파생상품소득금액은 선물, 선도, 스왑, 옵션에 대해 계약 시 약정가격, 최종결제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sup>60)</sup>
- 파생상품 유형별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 (선물)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선도) 계약에 따라 수취하는 금전에서 지급하는 금전을 차감한 금액
  - (옵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행사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스왑) 과세기간에 수취하였거나 수취하기로 한 가액에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액을 차감한 금액
  - (차액결제거래: CFD<sup>61)</sup>) 계좌별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의 차액 및 기타수입과 비용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sup>62)</sup>

5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0(2021. 2. 17. 신설)

59) 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10(2021. 3. 16. 신설) 참조

60) 대통령령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자세한 산정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1(2021. 2. 17. 신설)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의11(2021. 3. 16. 신설) 참조

61) 2021. 4.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며, 2022. 12. 31. 이전까지는 현행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며, 2023. 1. 1. 이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소득세법」 제161조의2 제4항, 2021. 2. 17. 신설)

- 파생상품소득금액 계산 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위탁매매수수료 등)<sup>63)</sup>은 공제하여야 함

## 5)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금액

- 금융투자 상품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시 기준시가를 사용하며,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소득구분별로 차이가 있음<sup>64)</sup>
- 주식등의 기준시가는 종류, 상장 여부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함<sup>65)</sup>
  - 상장주식<sup>66)</sup>의 경우 양도일 이전·이후 1개월 중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함<sup>67)</sup>
  - 비상장주식의 경우 순손익가치<sup>68)</sup>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며,<sup>69)</sup> 그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함<sup>70)</sup>
  - 신주인수권의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 사채발행이율, 적정할인율<sup>71)</sup>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sup>72)</sup>

6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함(2021. 3. 16. 신설)

6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1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의11 제3항

6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2; 동법령 제150조의23(2021. 2. 17. 신설)

65) 「소득세법」 제87조의17 제1항 제1호(2020. 12. 29. 신설)

66) 코스닥·코넥스 상장주식의 경우 취득일 전후 1개월 이내 거래정지 또는 관리종목 지정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경우 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3항)

6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2 제1항 제1호(2021. 2. 17. 신설)

68) '순손익가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10%)로 나누어 산정한 가액으로 함

6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2 제1항 제2호(2021. 2. 17. 신설)

70)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하한 규정은 2018. 2. 13. 시행령 개정 시 신설된 것으로, 2018. 4.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함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한 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2. 사업개시 전 법인 또는 사업 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3.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의 주식

- 채권등의 기준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sup>73)</sup>
- 파생결합증권의 기준시가는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이자율·지표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액을 의미하며 상장된 경우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비상장된 경우 발행회사가 공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함<sup>74)</sup>
- 파생상품 기준시가는 파생상품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액을 의미하며 상장된 경우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비상장된 경우 조건의 내용·조건 성취의 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sup>75)</sup>

#### 나.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산정<sup>76)</sup>

-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과 기본공제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함
-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은 각 과세기간의 직전 5년간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이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sup>77)</sup>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이월 공제 가능함<sup>78)</sup>

71)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이자율(8%)을 의미함(「소득세법 시행규칙」, 2021. 3. 16. 신설)

7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2 제1항 제3호 가목(2021. 2. 17. 신설). 이는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의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이며,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 중의 평가방법은 동 법령 나목을 참조

73) 「소득세법」 제87조의17 제1항 제2호(2020. 12. 29.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74) 「소득세법」 제87조의17 제1항 제3호(2020. 12. 29. 신설); 동법 시행령 제150조의23 제1항(2021. 2. 17. 신설)

75) 「소득세법」 제87조의17 제1항 제3호(2020. 12. 29. 신설); 동법 시행령 제150조의23 제2항(2021. 2. 17. 신설)

76) 「소득세법」 제87조의4(2020. 12. 29. 신설) 및 동법 시행령 제150조의5(2021. 2. 17. 신설)

77)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에 따라 확정된 결손금에 한함(「소득세법」 제87조의4; 동 법령 제150조의5, 2021. 2. 17. 신설)

II.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25

-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과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이 모두 0보다 큰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함<sup>79)</sup>
  -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공제함
- 기본공제금액은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간 5천만원, 해외주식 등 ‘기타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으로 함<sup>80)</sup>
-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 또는 기타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거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으로 모두 공제된 경우 기본공제는 공제하지 아니함<sup>81)</sup>

〈표 II-2〉 금융투자소득상품별 기본공제

금융투자상품 구분	기본공제금액	합산대상
국내상장주식 등	5천만원	- 국내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K-OTC) - 공모 국내주식형펀드(ETF 포함) <sup>1)</sup>
기타금융투자상품	250만원	- 해외주식 - 해외펀드(국내 상장 해외 ETF 포함) - 파생결합증권(ELS·DLS) - 파생상품(선물·옵션 등) - 채권양도차익 - 비상장주식 - 부동산·채권·혼합형 펀드 - 사모펀드

주: 1) 공모 국내주식형펀드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4 및 제150조의26;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의13)  
 ① 「자본시장법」상 증권집합투자기구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  
 ② 「집합투자규약」상 자산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 및 상장투자회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자료: 기획재정부, 「(상세본)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 2021. 1. 6.,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53123&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53123&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검색일자: 2021. 1. 19.

78) 「소득세법」 제87조의4 제2항 제1호(2020. 12. 29. 신설)  
 7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5 제1항(2021. 2. 17. 신설)  
 80)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과 해외주식등 기타금융투자소득을 구분하여 적용함(「소득세법」 제87조의18 제1항, 2020. 12. 29. 신설)  
 8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5 제3항(2021. 2. 17. 신설)

## 다.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

-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은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함
-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sup>82)</sup>를 가산한 금액을 총결정세액으로 함
  - (감면세액) 「소득세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감면세액을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다만 현행법상 주식양도와 관련된 감면세액 및 세액공제는 규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금융투자소득세 감면세액은 다음의 산식과 같이 계산함

$$\text{금융투자소득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금융투자소득금액} - \text{기본공제액})}{\text{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times \text{감면율}$$

## 3. 세율

-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를 적용함<sup>83)</sup>

〈표 II-3〉 2023년 이후 금융투자소득세율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6천만원 + (과세표준 - 3억원) × 25%

자료: 「소득세법」 제87조의19

8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말함

83) 「소득세법」 제87조의19(2020. 12. 29 신설)

## 4. 신고방법 및 납부절차

### 가. 원천징수<sup>84)</sup>

-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존재함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 받는 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금융회사 등이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의 지급자가 그 금융회사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한 것으로 봄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임
  
- 금융회사 등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후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함<sup>85)</sup>
  - 금융회사 등은 원천징수기간 중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좌 보유자별로 합산하고 금융투자소득금액(또는 결손금)을 누적하여 관리하여야 함<sup>86)</sup>
  
- 원천징수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sup>87)</sup>이며, 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반기의 시작일부터 계좌 해지일까지로 함<sup>88)</sup>
  - 반기별로 금융투자소득금액(또는 결손금)을 계산하며, 상반기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하반기의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함

84) 「소득세법」 제129조부터 제129조 및 동법 제1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203조의2 및 제203조의3

85) 「소득세법」 제148조의2 제2항(2020. 12. 29. 신설)

86) 「소득세법」 제148조의2 제3항(2020. 12. 29. 신설)

87) 반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말함

88) 「소득세법」 제148조의2 제1항(2020. 12. 29. 신설)

- 상·하반기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계산한 연간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을 환급함
-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는 원천징수기간 종료일(6월 30일 또는 12월 31일)까지 기본공제 그룹별로 각각 금융회사를 선택하여 기본공제 적용을 신청해야 함<sup>89)</sup>
  - 동일 과세기간 내에 기본공제 적용을 신청한 금융회사는 변경할 수 없음
- 기본공제계좌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계좌 보유자별로 누적 손익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부터 잠정원천징수세액의 인출을 제한할 수 있음<sup>90)</sup>
  - 금융회사 등은 계좌 보유자별로 금융투자소득금액이 발생할 때마다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대해 인출을 제한할 수 있음
- 금융회사 등은 반기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인별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함<sup>91)</sup>
  - 중도해지계좌의 경우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해야 함
  - 즉 상반기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는 다음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한 경우 인별 금융투자소득금액 등이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별 결손금 통지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sup>92)</sup>
  - 다만 반기 마지막 달의 말일로부터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간주함
    -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번호 등을

8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2 제5항 및 제6항(2021. 2. 17. 신설)

90) 「소득세법」 제148조의2 제3항(2020. 12. 29. 신설); 동법 시행령 제203조의2 제4항(2021. 2. 17. 신설)

91)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9호

92) 「소득세법」 148조의3(2020. 12. 29. 신설); 동법 시행령 제203조의5(2021. 2. 17. 신설)

기재하여 통보

- 금융회사 등이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번호 등을 정보통신으로 통보

- 반기 발생 금융투자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통지 의무는 있음

#### 나. 예정신고<sup>93)</sup>

- 예정신고 대상자는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예정신고·납부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예정신고 시 ‘금융투자소득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금융투자 상품 거래계약서’<sup>94)</sup> 사본과 ‘양도비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예정신고 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를 말하며, 예정신고 대상 소득 구분에 따라 예정신고기한에 차이가 존재함
  -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았으나 취득가액 불분명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으로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소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93) 「소득세법」 제87조의21; 87조의22; 동법 시행령 제150조의27부터 제150조의29(2021. 2. 17. 신설)

94) 금융투자 상품 거래계약서는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거래 내역서임(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2020, p. 59)

〈표 II-4〉 금융투자소득의 지급기관 원천별 예정신고기한

소득 구분	예정신고기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았으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부담보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으로서 양도로 보는 소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자료: 「소득세법」 제87조의21(2020. 12. 29. 신설)

-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결정세액을 예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함
- 감면세액은 예정신고 대상 소득금액에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하며, 현행 법상 주식양도와 관련된 감면세액은 규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계산방법과 동일하나,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이미 신고한 세액과 합산신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함
    - 예정신고산출세액 = [(A+B-C×D)-E
    - A: 이미 신고한 금융투자소득금액의 합계
    - B: 2회 이후 신고하는 금융투자소득금액
    - C: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단, 금융회사 등에서 공제하지 않은 경우)
    - D: 세율(20%, 25%)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합계

#### 다. 확정신고<sup>95)</sup>

- 확정신고 과세기간에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확정

95) 「소득세법」 제87조의23 및 제87조의24; 동법 시행령 제150조의30 및 제150조의31(2021. 2. 17. 신설)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예정신고를 한 자로서 다음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원천징수세액 및 예정신고 납부세액 대비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자
  - 환급세액이 있는 자
  -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금을 확정하려는 자
  - 법률에 따른 비과세·세액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
- 확정 신고·납부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임
  - ‘금융투자소득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금융투자 상품 거래계약서’ 사본과 ‘양도비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확정 신고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음
-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 예정신고 기납부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함<sup>96)</sup>
  - 다만 현행법상 주식양도와 관련된 감면세액 및 세액공제는 규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라. 그 밖의 관련 제도

### 1)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

-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

---

96) 「소득세법」 제87조의24(2020. 12. 29. 신설)

음 다음달 말일까지(이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sup>97)</sup>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해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원천징수영수증 부분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sup>98)</sup>

## 2)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의무<sup>99)</sup>

□ 금융회사 등은 금융 투자 상품 거래내역을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음

- 금융회사 등의 보관의무 자료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됨
  -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 상품 계좌별 거래명세서
  -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 매매거래에 대한 거래명세서
  -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명세서
  - 장외거래된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중개·주선, 대리 명세서 등

□ 국세청장은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거래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등에 보관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금융회사 등은 국세청장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함

97)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9호

98) 「소득세법」 제164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15조 제1항

99) 금융기관 등의 금융투자 상품 거래내역 등의 자료 보관 의무 및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과세관청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내역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소득세법」 제174조2; 동법 시행령 제225조의2)

## 5. 특례규정

### 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분리과세 혜택<sup>100)</sup>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개인의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에 도입된 제도이며, 가입자 요건 및 연간 납입한도와 총납입한도, 의무납입기간이 존재함<sup>101)</sup>
  - 가입자는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15~18세 거주자임
    - 다만 가입일 또는 연장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니어야 함
  -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원, 총납입한도는 1억원<sup>102)</sup>이며, 연간 한도에 미달하여 납입한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함
  -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중도 해지하는 경우 과세혜택을 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함
    - 다만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퇴직·폐업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해지 가능함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이라도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납입원금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간주함
- ISA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예금성 상품, 집합투자증권,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2021년 2월 이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sup>103)</sup>에도 투자 가능함
  - ISA는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가입자는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한 계좌만 개설 가능함

100) 금융투자협회, 「ISA 제도 개요」, <http://isa.kofia.or.kr/>, 검색일자: 2021. 2. 4.

101) 2020년 세법개정예에 따라 가입자요건(근로 및 사업소득자→19세 이상 거주자) 및 의무가입기간(5→3년)이 완화됨(「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2021. 1. 1.부터 적용)

102) 기 가입한 재형저축, 소장펀드를 합산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함

103)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의미함

- 신탁형은 가입자가 금융사에 구체적인 운용을 지시함으로써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편입 상품을 선택하는 유형임
- 일임형은 가입자와 금융사 간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자가 제시하는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선택적 또는 전적으로 위임하여 운용하는 유형임
- 투자중개형은 투자중개업자의 위탁계좌 형태로 개설되며, 가입자가 직접 국내 상장주식 매매 및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으로, 2021년 2월 이후부터 운용 가능함

□ 가입기간 동안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순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ISA 계좌로부터 발생한 순소득은 일정 한도 범위 내에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9.9% 세율로 분리 과세함<sup>104)</sup>
  - 계좌 내 상품 간·기간 간 손익통산이 가능하며, 국내 상장주식 투자에 따른 손실 또한 다른 상품에서 발생한 운용손익과 통산이 가능함
  - 다만 국내 상장주식 투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상품의 운용손익과 합산하지 않으며, 2022년까지는 현행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2023년 이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 제도에 따라 과세됨<sup>105)</sup>
- 비과세 한도는 ISA 가입기간 동안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의 순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함
  - 일반적으로 순소득금액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하며, 서민형 가입자 등<sup>106)</sup>의 경우 비과세 기준금액을 400만원으로 함

104)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경우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15.4%로 분리과세 하고 있으나, ISA 계좌의 경우 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손익에 대하여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함(자료: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ISA 다모아」, <http://isa.kofia.or.kr/>, 검색일자: 2021. 2. 4.)

105) 『브릿지경제』, 「주식 답을 수 있는 '중개형 ISA'로 절세」, 2021. 3. 9.,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10307010001506>, 검색일자: 2021. 3. 9.

106) 비과세기준금액 400만원을 적용받는 가입자는 ① 서민형 가입자(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②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농어민을 의미함

## 나. 조세회피 방지규정

- 조세회피 방지규정은 정해진 바가 없음

## 6. 증권거래세

- 상장 여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 매도 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sup>107)</sup>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임
-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함에 따른 과세 확대를 감안하여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하할 예정임
  - 현재 및 향후에 적용될 증권거래세율은 <표 II-5>와 같음

<표 II-5> 증권거래세율의 연도별 변화

(단위: %)

구분	현행	2021~2022년	2023년 이후
코스피 <sup>1)</sup>	0.1	0.08	0
코스닥	0.25	0.23	0.15
코넥스	0.1	0.1	0.1
기타	0.45	0.43	0.35

주: 1) 농어촌특별세 0.15%는 현행 유지(「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자료: 「증권거래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107) 「증권거래세법」 제2조

## Ⅲ. 주요국의 금융자산 양도 관련 과세제도

### 1. 미국

#### 가. 개요

##### 1) 과세방법

- 미국은 자본이득에 대하여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혼합하여 과세하고 있음
  - 미국의 소득세는 면세소득으로 규정하지 않은 모든 소득이 총소득에 포함되는 포괄주의 방식을 따르고 있음
  - 따라서 재산 거래로 인한 자본이득도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소득세 과세체계에 따라 과세되는 종합과세방식이나 장기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함 - 미국 「내국세법」 제61조(a)에 의해 총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수수료·부가혜택 등의 서비스에 대한 보상, 사업으로 인한 총소득, 재산 거래로 인한 자본이득, 이자, 임대료, 로열티, 배당금, 연금, 생명보험 및 기부 계약 소득, 연금, 부채면제 소득, 파트너십 총소득의 분배, 사망자에 대한 소득, 재산 또는 신탁 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임<sup>108)</sup>

##### 2) 과세대상

- 자본이득이란 자본자산(capital asset)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의미함<sup>109)</sup>

108) IRC §61(a)

109) IRS, "Topic No. 409 Capital Gains and Losses," <https://www.irs.gov/taxtopics/tc409>, 검색

- 자본자산은 개인 또는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거의 모든 자산을 포함함
  - 즉 납세자가 소유하는 주택, 가구, 자동차 및 수집품 등의 개인용도 자산(Personal-use property)과 주식, 채권, 투자목적 부동산 등의 투자자산(Investment Property)을 포함함<sup>110)</sup>
- 자본자산을 매각할 때 매각으로 얻은 금액과 자산의 조정된 기준금액과의 차이가 자본이득 또는 자본손실임
  - 자동차, 가구 등과 같이 개인용도 재산의 판매로 인한 손실은 자본손실 공제 대상이 아님
- 투자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Investment Property)에는 주식, 채권(bonds), 재무부증권(Treasury bills), 어음(notes) 등의 금융자산이 포함됨<sup>111)</sup>
  - 영업(Trade or Business)에 사용되는 자산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음
- 자본이득 과세에서 제외되는 주식 및 채권은 다음과 같음<sup>112)</sup>
  - 다음의 주식 거래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및 공제 가능한 손실에 포함하지 않음
    - 합병, 자본재구성, 파산, 기업분할, 기업인수, 기타 기업재편을 초래하는 기업 간 주식 거래인 경우 자본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 동일기업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개인 간 거래뿐 아니라 개인과 기업 간 거래에서도 자본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 채권 및 우선주의 전환권에 따른 채권의 주식 전환,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의 경우에는 자본손익이 발생하지 않음
  -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US Treasury Notes or Bonds)의 거래는 자본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배우자(또는 배우자가 수혜자인 신탁)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

일자: 2020. 12. 23.

110) IRS, *Sales and Other Dispositions of Assets*, Pub 544, 2019, p. 20

111) IRS,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Pub 550, 2019, p. 35

112) IRS,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Pub 550, 2019, pp. 46~47

익을 인식하지 않음<sup>113)</sup>

- 배우자에 대한 재산 양도는 판매나 교환이 아니라 증여로 처리되므로 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 재산을 양도받은 자의 장부가는 양도 직전 증여한 자의 조정장부가와 동일함 (carry over basis rule)

## 나. 과세소득 산정

### 1) 양도의 범위

- 투자자산의 자본이득은 투자자산의 매각 및 교환에 의해 발생함<sup>114)</sup>
  - 매각이란 일반적으로 현금, 저당권, 어음 및 기타 지급약속을 받은 대가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임
  - 교환이란 다른 자산 및 용역의 대가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며 매각과 동일하게 과세됨
    - 자산을 자발적으로 매각하고 받은 현금으로 즉시 유사한 자산을 대체취득하는 것은 교환에 해당하지 않음
  - 채권이나 어음의 경우 만기 상환(Redemption or Retirement)은 매각 및 교환으로 간주함
  - 피상속인의 자산을 유산관리인, 상속인 및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매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가치가 없어진 주식, 주식에 대한 권리, 채권은 당해 과세연도 말에 매각된 것으로 간주하며,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 또는 단기 자본손실로 반영함

113) 배우자가 비거주외국인인 경우 또는 재산이 신탁에 이전되고 부채가 장부가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손익을 인식함

114) IRS,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Pub 550, 2019, p. 36

- 과세연도 말에 section 1256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연도 말에 공정시장가치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본손익을 인식하여야 함<sup>115)</sup>
  - section 1256 계약이란 선물계약, 외화통화계약, 옵션 등<sup>116)</sup>이며,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물품스왑, 인덱스스왑 등<sup>117)</sup>은 section 1256 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 자본손익을 인식할 때에, 실제 자산의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자본손익의 60%는 장기로, 40%는 단기로 인식하여야 함
  - 단 헤지거래의 경우 과세연도 말에 시가에 의한 자본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 2) 자본이득의 산출

- 투자자산의 자본손익은 양도로 인해 실현된 가액에서 판매 시점의 수정장부가액 (Adjusted Basis)을 차감하여 산출함<sup>118)</sup>
  - 실현된 가액이란 매각 또는 교환으로 받은 금액에서 모든 거래비용(상환수수료, 판매수수료, 판매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현금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공정가치도 포함함
- 수정장부가액이란 매각, 교환 또는 기타 재산 처분에 대한 손익을 계산하기 전에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필요한 조정을 반영한 가액임<sup>119)</sup>
  - 주식 또는 채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입가액에 중개비 및 수수료와 같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임
  - 매입 이외의 방식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한 경우, 장부가액은 일반적으로 공정시장가치 또는 이전 소유자의 수정장부가액으로 결정됨
  - 주식의 취득 이후 발생하는 특정 이벤트, 예를 들면 비과세 주식배당 또는 주식

115) IRS,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Pub 550, 2019, p. 37

116) 선물계약, 외화통화계약, 옵션 등이란 Regulated futures contract, Foreign currency contract, Nonequity option, Dealer equity option, or Dealer securities futures contract임

117)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물품스왑, 인덱스스왑 등이란 Interest rate swaps, Currency swaps, Basis swaps, Interest rate caps, Interest rate floors, Commodity swaps, Equity swaps, Equity index swaps, Credit default swaps, or Similar agreements임

118) IRS,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Pub 550, 2019, p. 43

119) IRS,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Pub 550, 2019, p. 40

분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장부가액의 조정이 필요함<sup>120)</sup>

- 주식 또는 판매한 채권의 주식을 적절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장부가를 사용하지만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수량으로 증권(securities)을 매매하여, 판매한 주식을 적절하게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한 증권의 장부가(basis)는 먼저 취득한 증권의 장부가를 적용함<sup>121)</sup>
- <사례> 다음에 제시하는 ①~⑤의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 처분한 주식의 장부가는 식별할 수 없으므로 먼저 취득한 주식을 사용하여 장부가를 파악해야 함
  - ① 2004년에 XYZ Corporation 주식 100주를 주당 10달러에 매입
  - ② 2005년 1월에 주당 11달러에 200주를 추가로 매입
  - ③ 2005년 7월에 아들에게 50주를 양도
  - ④ 2007년 12월에 주당 9달러에 100주를 매입
  - ⑤ 2019년 4월에 130주를 매각
    - 2005년 7월 아들에게 양도한 주식의 장부가는 \$500(= 50×\$10)
    - 2019년 4월에 매각한 주식 130주의 장부가는 \$1,380(= 50×\$10 + 80× \$11)
- 특정 뮤추얼펀드 주식을 제외하고는 주당 평균가격을 사용하여 주식 판매의 손익을 계산할 수 없음
  - 2011년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계좌에 예치한 경우 뮤추얼펀드 주식의 평균장부가 사용을 선택할 수 있음

### 3) 적격소기업주식의 자본이득

- 적격소기업주식(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QSBS)의 양도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이연 및 소득공제의 특례를 적용함<sup>122)</sup>

120) IRS는 증권의 조정장부가액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많은 중개회사 및 회계 소프트웨어에서 거래를 가져올 수 있는 Form 8949 및 Schedule D(Form 1040 또는 1040-SR)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와 협력하고 있음

121) IRS,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Pub 550, 2019, pp. 40~41

- 적격소기업주식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식임
  - C 법인의 주식일 것
  - 1993년 8월 10일 이후 최초로 발행된 주식으로, 1993년 8월 9일 이후와 주식 발행 전 회사의 총자산이 5천만달러 이하일 것
  - 최초 발행한 주식을 현금 및 주식 이외의 재산과 교환하거나 법인에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직접 취득한 것이어야 함
  -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기간 동안 해당 C 법인은 Active Business Test<sup>123)</sup>를 충족하여야 함
  - 주식 발행 2년 전부터 2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법인이 납세자와 그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할 수 없어야 함
  - 주식 발행 1년 전부터 1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 자기주식을 주식 총가액의 5% 이상을 매입할 수 없어야 함
  
- 과세이연은 6개월 이상 보유한 적격소기업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허용됨<sup>124)</sup>
  - 적격소기업주식을 양도한 후 대체주식을 취득하고 과세이연을 선택한 경우, 대체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과세이연한 금액만큼을 차감함으로써 최초 양도에 대한 이익을 과세이연 할 수 있음

122) IRS,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Pub 550, 2019, p. 63.

123) Active Business Test에 부합하려면, 적격기업이면서 적격한 거래에 자산의 80%를 사용하여야 함

① 적격기업이란 다음을 제외한 법인임

- 국내 및 해외 판매법인, IRC 936에 의한 자회사가 있는 법인, regulated investment company, REIT, REMIC, 특정금융자산유통화투자신탁(FASITs), 협동조합

② 적격한 거래란 다음을 제외한 거래임

- 건강·법률·공학·건축·회계·보험계리학·공연예술·컨설팅·운동·금융서비스 또는 중개서비스 분야에서 수행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것

- 1인 이상의 평판 또는 기술이 주요 자산인 사업

- 은행·보험·금융·리스·투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

- 농업사업

- 고갈되는 제품의 생산 또는 추출과 관련된 사업

- 호텔, 모텔, 레스토랑 및 이와 유사한 사업

124) IRS,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Pub 550, 2019, p. 64

- 이연된 이익은 대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가 이루어짐
  - 과세이연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함
    - 양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체주식을 취득하여야 함
    - 대체주식은 적격소기업주식이어야 함
    - 대체주식은 매입 후 6개월 동안 소기업주식의 사업활동 요건(active business requirement)을 충족해야 함
  - 대체주식의 보유기간은 양도한 주식의 보유기간을 포함함
  - 대체취득한 주식의 장부가는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된 이익을 차감한 금액임
- 소득공제는 5년 이상 보유한 적격소기업주식의 매각 및 교환에서 얻은 양도차익의 최대 50%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sup>125)126)</sup>
-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자본이득에서 공제 부분(이하 ‘Section1202 공제’라 함)을 차감한 이익에 대해서는 28%의 세율을 적용함
  -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자본이득은 다음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함
    - 해당 과세기간에 매각 및 교환한 적격주식 장부가액의 10배
    - 1천만달러(부부 별도 신고 시 각 500만달러)에서 이전 과세기간에 Section1202 공제 대상이었던 동일한 주식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을 차감한 금액
  - 이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주식 처분에 따른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 제외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소규모기업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제도임<sup>127)</sup>

#### 4) 자본손실의 처리

- 자본손실이 자본이득을 초과하는 경우 순자본손실은 소득세 신고 시 매년 3천달러

125) ‘Section 1202 Exclusion’이라 함, IRS,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Pub 550, 2019, p. 64

126) 특정 주식(empowerment zone business stock)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에 귀속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60%까지 공제할 수 있음

127) KPMG, “The Section 1202 Gain Exclusion: Rules and Issues,” <https://tax.kpmg.us/events/webcasts/2020/the-section-1202-gain-exclusion.html>, 검색일자: 2021. 1. 26.

(부부별도신고인 경우 1,500달러)를 한도로 일반소득(ordinary income)에서 공제할 수 있음<sup>128)</sup>

- 순자본손실의 공제는 소득세 신고서(Form 1040 or 1040-SR) 첨부 서류인 Schedule D(Capital Gains and Losses)를 통해 신고함
- 일반소득에서 공제하고도 남은 순자본손실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으며, 이월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손실을 이월하는 경우, 장기 또는 단기의 성격을 유지함
  - 전기에서 이월된 단기손실은 당기 단기손실과 합산하고, 전기에서 이월된 장기손실은 당기 장기손실과 합산함
  -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된 순장기자본손실은 장기자본이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단기자본이득에서 공제함
- 당해 연도에 단기손실과 장기손실이 모두 있는 경우, 단기손실을 먼저 일반소득에서 공제하고 연간 공제한도가 남은 경우 장기손실을 공제함

#### 다. 세율

- 투자자산을 매각 및 교환한 경우 장기 자본이득과 단기 자본이득에 대하여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본이득의 장·단기 구분을 위하여 보유기간의 판단이 중요함<sup>129)</sup>
- 투자자산을 1년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발생하는 자본이득 및 손실은 장기자본이득 또는 장기자본손실이 됨
-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보유기간은 거래일과 실제 주식이 인도되고 지분이 완료된 날은 차이가 있으므로 거래일 다음날부터 보유기간이 시작됨
- 증여에 의해 투자자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자의 조정장부가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그대로 이월되는 때에는 보유기간도 증여자의 보유기간이 시작된 날부

128) IRS,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Pub 550, 2019, p. 66

129) IRS,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Pub 550, 2019, p. 53

터 시작되고,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증여일의 공정시장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다음 날부터 시작됨

-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의 보유기간은 분배일로부터 시작됨
- 적격소기업주식의 경우, 자본이득에 대한 공제 및 과세이연을 적용한 경우 보유기간은 이전주식의 보유기간이 포함됨

- 1년 이하 기간 보유한 자본자산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을 단기자본이득이라 하고, 단기자본이득은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됨
  - 개인소득세율은 납세자 지위별 과세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됨

〈표 Ⅲ-1〉 미국의 개인소득세 과세구간별 세율(2020년)

(단위: 달러, %)

과세구간			세율
독신	부부합산	세대주	
~9,875	~19,750	~14,100	10
9,876~40,125	19,751~80,250	14,101~53,700	12
40,126~85,525	80,251~171,050	53,701~85,500	22
85,526~163,300	171,051~326,600	85,501~163,300	24
163,301~207,350	326,601~414,700	163,301~207,350	32
207,351~518,400	414,701~622,050	207,351~518,400	35
518,401~	622,051~	518,401~	37

자료: Tax Foundation, "2020 Tax Brackets," p. 1

- 순자본이득(net capital gain)에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됨<sup>130)</sup>
  - 순자본이득이란 해당 연도의 순장기자본이득(net long-term capital gain)에서 순단기자본손실(net short-term capital loss)을 차감한 금액임
    - 순단기자본이득은 일반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

130) IRS,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Pub 550, 2019, p. 67

- 순자본손실은 3천달러(부부별산신고 시 1,500달러)까지 일반소득에서 공제하고 잔액은 이월함
- 분리과세되는 세율을 ‘최대자본이득세율(maximum capital gain rates)’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순자본이득이 일반소득에 합산되어 종합과세되었을 때 적용되는 세율이 분리과세되는 우대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종합과세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임
  - 즉 최대자본이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보다 일반세율로 계산한 세금이 낮아지면 일반세율로 계산한 세금을 적용함
  - 예를 들어, 순자본이득은 28% 세율이 적용되는 자본자산 한 종류만 있고, 다른 과세소득은 28% 미만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28%의 자본이득세율은 적용되지 않음
- 2019년 순자본이득에 적용되는 최대자본이득세율은 납세자 지위 및 연간소득에 따라 0%, 15%, 20%의 세율을 적용함
  - 적격소기업주식의 경우, 적격소기업주식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서 section 1202 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28%의 세율을 적용함<sup>131)</sup>

〈표 III-2〉 미국의 장기자본이득 세율(2020년)

(단위: 달러, %)

독신	과세구간		세율
	부부합산	세대주	
0~40,000	0~80,000	0~53,600	0
40,001~441,450	80,001~496,600	53,601~469,050	15
441,451 ~	496,601~	469,051~	20

자료: Tax Foundation, “2020 Tax Brackets,” p. 4

## 라. 신고방법 및 납부절차

□ 중개인을 통해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또는 특정 상품과 같은 자산을 판매한 경

131) 수집품에 대해서는 28%, 1250 이익(감가상각부동산에 대한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2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함

우 중개인은 각 거래마다 Form 1099-B(Proceeds From Broker and Barter Exchange Transactions)를 납세자에게 송부하고 사본은 IRS에 송부하며, 해당 서식에는 총수익이 표기되어 있음<sup>132)</sup>

- 유가증권을 매각한 납세자는 중개인이 보낸 1099-B에 당해 연도에 매각한 유가증권의 매입원가(basis)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Form 8949(Sales and Other Dispositions of Capital Assets)를 작성함
- 과세기간 중 주식 채권등을 중개인을 통해 판매한 경우 중개인으로부터 1099-B(Proceeds From Broker and Barter Exchange Transactions)를 수취하여, 동 서류에 기재된 양도가액을 기초로 Schedule D(Capital Gains and Losses)와 Form 8949(Sales and Other Dispositions of Capital Assets)를 작성하여 소득신고 시 소득세신고서(Form 1040)와 함께 제출함<sup>133)</sup>
- 1099-B(Proceeds From Broker and Barter Exchange Transactions)는 과세기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수취하며, 국세청도 중개인으로부터 Form 1099-B 사본을 수취함

## 마. 특례규정

### 1) 가장매매 방지

- 개인<sup>134)</sup>이 주식 또는 증권(stock or securities)의 가장매매(wash sale)에서 발생한 손실은 공제할 수 없음<sup>135)</sup>
- 가장매매란 주식 또는 증권을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로 매도하고, 매도 전·후

132) IRS,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Pub 550, 2019, p. 35

133) IRS,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Pub 550, 2019, pp. 64~65; 박명호·기은선·정희선, 『주요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2008 p. 70

134) 주식등의 딜러로서 비즈니스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

135) IRS,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Pub 550, 2019, p. 56

30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계약 또는 옵션을 획득하는 다음의 거래를 의미함

-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식등을 매입
- 과세거래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식등을 취득
-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식등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 또는 옵션을 취득
- 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greement, IRA·Roth IRA)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식등을 취득

- 주식을 매도하고 배우자 또는 본인이 통제 가능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식을 매입하는 것도 가장매매에 해당함
- 주식 또는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취득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계약 및 옵션의 거래에도 적용됨
  - 상품선물(commodity futures)이나 외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음
- 가장매매 방지규정의 목적은 납세자가 인위적인 손실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sup>136)</sup>

□ 허용되지 않는 손실은 새로 취득한 주식등의 장부가액에 가산함으로써 자본손실이 신규취득한 주식등으로 이월되는 효과가 있음

- (사례) 1천달러에 X주식 100주를 매입한 후 750달러에 손실로 매도한 후 30일 이내에 동일한 주식 100주를 800달러에 매수한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식을 구입한 것이므로 자본손실 250달러는 공제할 수 없고, 주식의 공제하지 못한 손실은 취득가인 800달러에 가산하여 수정장부가액은 1,050달러(=800달러 +250달러)가 됨

□ 주식 또는 증권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함<sup>137)</sup>

136) Investopedia, "Wash-Sale Rule," <https://www.investopedia.com/terms/w/washsalerule.asp>, 검색일자: 2021. 1. 29.

137) IRS,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Pub 550, 2019, pp. 56~57

- 일반적으로 한 회사의 주식 또는 증권은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증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조직개편 등의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일 수 있음
- 회사의 채권 또는 우선주는 동일 회사의 보통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채권 또는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의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 2) 스트래들

- 스트래들(straddle) 거래에서 하나의 포지션 처분에 대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상쇄 포지션에서 인식하지 않은 이익(unrecognized gain)보다 손실이 더 많은 경우에만 손실을 공제할 수 있음<sup>138)</sup>
- 스트래들이란 파생상품의 상반되는 포지션을 이용하여 자본손실과 자본이득을 서로 다른 과세연도에 발생시킴으로써 자본이득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를 의미함
- (사례) 2019년 7월 11일에 스트래들 거래가 시작되었고 2019년 12월 12일에 1만 5천달러의 손실로 한 포지션을 마감하였으며, 2019년 12월 31일에 상쇄포지션에서 1만 2,750달러의 인식하지 않은 이익이 발생한 경우, 2019년에 마감한 포지션에 대한 공제 가능한 손실은 2,250달러(15,000-12,750)로 제한되고 공제하지 못한 손실 1만 2,750달러는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함

## 3) 순투자소득세

- 순투자소득세는 법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 부동산 및 신탁의 순투자소득에 대해 3.8%의 세율로 부과함<sup>139)</sup>

138) IRS,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Pub 550, 2019, p. 59; 김갑래,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6, p. 26.

139) IRS,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Net Investment Income Tax," <https://www.irs.gov/newsroom/questions-and-answers-on-the-net-investment-income-tax>, 검색일자: 2021. 1. 11.

- 순투자소득에는 이자, 배당금, 자본이득, 임대 및 로열티소득, 비적격연금, 금융 상품 또는 상품 거래와 관련된 사업소득 및 수동적 사업 등이 있음
  - 순투자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임금, 실업급여, 비수동적 사업으로 인한 영업소득, 사회보장급여, 위자료, 면세이자, 자영업소득 등임
- 순투자소득에 포함되는 자본이득은 다음과 같음
  - 주식, 채권 및 뮤추얼펀드 양도로 인한 이익
  - 뮤추얼펀드의 자본이득 분배
  - 투자부동산 판매로 인한 이익(주거주지가 아닌 두 번째 주택의 판매이익 포함)
  - 파트너십 및 S법인에 대한 지분 매각으로 인한 이익
- 공제 가능한 비용에는 투자이자비용, 투자자문 및 중개수수료, 임대 및 로열티 수입과 관련된 비용, 세금준비 수수료, 수탁비용, 주 및 지방 소득세가 포함됨
- 순투자소득세의 과세대상자는 순투자소득이 있고 조정총소득이 다음의 기준액을 초과하는 자임
  - 부부합산신고 25만달러, 부부별도신고 12만 5천달러, 독신·세대주 20만달러, 부양자녀 있는 미망인 25만달러
- 순투자소득세는 2013년 1월 1일에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부과되기 시작하였음

## 바. 증권거래세

- 연방 차원에서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 다만 뉴욕주의 경우 주식등에 대하여 증권거래세(Stock Transfer Tax)를 부과하고 있음<sup>140)</sup>
    - 증권거래세는 양도에 대해 부과함
    - 세율은 양도가격에 따라 주당 5달러 미만인 경우 1.25센트, 주당 5~10달러 2.5센트, 주당 10~20달러 4.75센트, 주당 50달러 이상 5센트이며, 양도가 아닌 지분 등의 이전에 대해서는 2.5센트임

140) NewYork State, "Stock transfer tax," <https://www.tax.ny.gov/bus/stock/stktridx.htm>, 검색일자: 2021. 2. 4.

## 2. 일본

### 가. 개요

#### 1) 과세방법

- 일본은 자산의 양도 또는 이전으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음<sup>141)</sup>
  - 자산의 종류에 따라 주식등과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분리과세하지만 그 외 자산의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함<sup>142)</sup>
  - 금융상품인 '주식등'의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신고 분리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음<sup>143)</sup>
  
- 일본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유지하다가 기타소득과의 과세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하여 1989년 4월부터 과세로 전환하였음<sup>144)</sup>
  - 과세로 전환 당시에는 신고분리과세 방식을 원칙으로 하지만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었음<sup>145)</sup>
  - 이후 2003년부터 신고분리과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였고 주식등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20%의 세율로 과세함
  - 2014년도부터는 원칙 세율인 20%로 과세로 전환되면서 특정계좌 내의 소액상장주식 등에 관련된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제도를 도입하였음

141) 日本 国税庁, 「No.3105 譲渡所得の対象となる資産と課税方法」,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joto/3105.htm>, 검색일자: 2021. 1. 23.

142)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토지, 차지권, 건물, 주식등, 금, 서화, 골동품, 선박, 기계기구, 어업권, 골프회원권, 특허권, 광업권 등임

143) 日本 国税庁, 「No.1463 株式等を譲渡したときの課税(申告分離課税)」,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463.htm>, 검색일자: 2021. 1. 19.

144) 植松利夫, 『日本の税制』, 財経詳報社, 2019, p. 112

145) 이상엽·오종문·윤선중, 『자본이득과세제도 개선과제 및 단계적 이행체계 연구』, 2017, pp. 22~24.

- 또한 개인 투자자의 주식투자위험을 경감하기 위하여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 상장주식 등의 배당소득(신고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특정공사채의 이자소득 및 특정공사채의 양도소득 간에 손익통산이 가능해졌음
- 납세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증권회사 및 은행 등의 금융상품거래업자가 설정한 특정구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그 소득계산 및 납세사무를 금융상품거래업자가 대행함으로써 간단한 신고 및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절차가 종료되는 특례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 2) 과세대상

- 금융자산 자본이득 과세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며, 일반적으로 ‘주식등’이라 함<sup>146)</sup>
  - 주식, 주주 또는 투자자가 될 권리, 주식의 배정을 받을 권리, 신주예약권
  -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출자자 지분,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합동회사 사원의 지분, 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의 지분 및 기타 법인의 출자자 지분
  - 「협동조직금융기관의 우선출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우선출자 및 「자산유동화법률」에서 규정하는 우선출자
  - 투자신탁의 수익권, 특정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권, 사채적인 수익권, 공사채
- 주식등은 다시 상장주식 등과 일반주식 등으로 구분함
  - 상장주식 등에는 상장주식, 채권, 펀드가 해당됨
    - 즉 주식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상장되어 있는 것과 공모주식투자신탁을 의미하며, 금융상품거래업자에게 매매위탁 등에 의해 매각하는 것이 해당됨<sup>147)</sup>

146) 日本 国税庁, 「No.1463 株式等を譲渡したときの課税(申告分離課税)」,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463.htm>, 검색일자: 2021. 1. 19.

147) SMBC日興証券, 「株式の税制」, [https://www.smbcnikko.co.jp/service/tax\\_sys/stock/index.html](https://www.smbcnikko.co.jp/service/tax_sys/stock/index.html), 검색일자: 2021. 1. 19.

- 상장주식 등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으로는 상장주식(신주예약권 포함), ETF(상장지수펀드), ETN(상장지수증권), J-REIT(상장부동산투자신탁), 상장신주예약권 부사채, 상장벤처펀드, 일본은행출자증권, 회사 이외의 법인이 특별법에 의해 발행하는 채권, 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되는 주식등, 공사채(국채, 지방채, 외국 국채, 외국 지방채, 사채, 할인채 등) 등이 있음<sup>148)</sup>
- 일반주식 등이란 상장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며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음
  - 비상장주식이 이에 해당함
- 일본의 경우 주식등의 양도차익은 신고분리과세하는데, 해당 상품에 관련된 배당 및 이자와 손익통산이 허용되므로 각각의 과세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sup>149)</sup>
  -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과 배당 및 이자를 포함한 금융상품<sup>150)</sup>의 과세방법은 신고분리과세, 종합과세, 원천분리과세의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짐
  - 신고분리과세는 1년간의 소득금액을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함
    - 신고분리과세 대상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공모주식투자신탁의 양도(상환)차익, 공사채의 양도(상환)차익, 공모공사채투자신탁의 양도(상환)차익, 신고분리과세를 선택한 상장주식의 배당금, 신고분리과세를 선택한 공모주식투자신탁의 분배금, 공사채의 이자, 공모공사채투자신탁의 분배금이 있음
  - 종합과세는 1년간의 소득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함
    - 종합과세 대상은 종합과세를 선택한 상장주식 배당금, 종합과세를 선택한 공모주식투자신탁의 분배금임

148) 日本 国税庁, 「No.1463 株式等を譲渡したときの課税(申告分離課税)」,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463.htm>, 검색일자: 2021. 1. 19.

149) SMBC日興証券, 「金融商品にかかる税金」, [https://www.smbcnikko.co.jp/service/tax\\_sys/kinyu/index.html](https://www.smbcnikko.co.jp/service/tax_sys/kinyu/index.html), 검색일자: 2021. 1. 18.

150) 일본의 경우 주식등에 관련된 양도차익과 배당금(분배금) 및 이자가 손익통산 가능하므로 양도차익, 배당 및 이자에 대한 과세제도를 함께 정리함

- 원천분리과세는 지불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로서 납세가 완결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함
  - 원천분리과세 대상은 예금이자임

〈표 III-3〉 금융상품 과세 개요

구분	신고분리과세	종합과세	원천분리과세
대상 소득	상장주식 양도차익 신고분리과세 선택한 상장주식 배당금 <sup>1)</sup> 공모주식투자신탁의 양도(상환)차익 신고분리과세 선택한 공모주식투자신탁 분배금 <sup>1)</sup> 공사채 양도(상환)차익 <sup>2)</sup> 공사채 이자 <sup>2)</sup> 공모공사채투자신탁의 양도(상환)차익 공모공사채투자신탁의 분배금	종합과세를 선택한 상장주식 배당금, <sup>1)</sup> 종합과세를 선택한 공모주식투자신탁의 분배금 <sup>1)</sup>	예금이자
세율	20%(소득세 15%, <sup>3)</sup> 주민세 5%)	소득세 5~45% <sup>3)</sup> 주민세 10%	20%(소득세 15%, <sup>3)</sup> 주민세 5%)
확정 신고	확정신고 필요 <sup>4)</sup>	확정신고 필요	확정신고 불가

주: 1. 상장주식배당금, 공모주식투자신탁·공모공사채투자신탁분배금, 공사채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원천징수되므로 확정신고 불필요함

- 1) 상장주식 배당금과 공모주식투자신탁 분배금은 신고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함
- 2) 동족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나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금융채권은 제외함
- 3) 2037년까지 모든 소득세액에 부흥특별소득세(소득세액 × 2.1%)가 추가됨
- 4) 원천징수가 특정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확정신고가 불필요함

자료: SMBC日興証券, 「金融商品にかかる税金」, [https://www.smbcnikko.co.jp/service/tax\\_sys/ki nyu/index.html](https://www.smbcnikko.co.jp/service/tax_sys/ki nyu/index.html), 검색일자: 2021. 1. 23.

- 선물거래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은 잡소득으로 구분하고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소득세 15%(지방세 5%)의 세율로 신고분리과세함<sup>151)</sup>
  - 선물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선물거래에서 발생한 잡소득과는 손익통산이 가능하지만 선물거래 외에서 발생한 잡소득과는 손익통산할 수 없음
  - 선물거래에서 발생한 손실로 공제하지 못한 부분은 3년간 이월하여 선물거래에서 발생한 잡소득의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음

151) 日本 国税庁, 「No.1522 先物取引に係る雑所得等の課税の特例」,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522.htm>, 검색일자: 2021. 1. 23.

## 나. 과세소득 산정

### 1) 주식

- 양도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양도소득은 상장주식과 일반주식 각각 산출하여야 함<sup>152)</sup>
  - 총수입금액은 양도가액을 의미하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은 취득비용과 위탁수수료 등임
  - 상장주식 등에서 발생한 양도손실은 일반주식 등에 관련된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일반주식 등에서 발생한 손실은 상장주식 등에 관련된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 2) 채권

- ‘금융소득과세 일체화’에 의해 2016년 1월부터 공사채와 공모공사채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상 취급이 개정되었음<sup>153)</sup>
  - 공사채의 이자, 양도손익, 상환차손익은 ‘상장주식 등’에 해당되어 신고분리과세 대상이 되며, ‘주식등’의 양도손익과 통산이 가능해졌음
  - 양도손실은 상장주식 등의 배당과 통산하고 3년간 이월공제 대상임
  - 특정계좌에서의 거래도 가능해졌으며, 양도차익(상환차익)은 20.315%(소득세 15.315%, 주민세 5%)로 신고분리과세되고, 특정계좌를 통해 원천징수하는 경우 확정신고는 필요 없음
  - 세법상 ‘특정공사채’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함
    - 동족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나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금융채권은 대상에서 제외됨
  -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20.315%로 원천징수되며 확정신고는 필요 없음

152) 日本 国税庁, 「No.1463 株式等を譲渡したときの課税(申告分離課税)」,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463.htm>, 검색일자: 2021. 1. 19.

153) SMBC日興証券, 「債券の税制」, [https://www.smbcnikko.co.jp/service/tax\\_sys/bond/index.html](https://www.smbcnikko.co.jp/service/tax_sys/bond/index.html), 검색일자: 2021. 1. 19.

- 2016년 이후 일반계좌에 보유하는 할인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음<sup>154)</sup>
  -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가 필요하며, 신고 시에 실제 상환손익을 신고하여 정산함
  - 상환 시 원천징수되는 할인채의 종류에는 할인으로 발행된 이자 없는 공사채(제로쿠폰채권 등), 이자 있는 공사채 중 액면금액의 90% 이하로 발행된 것임

### 3) 투자신탁(펀드)

- 공모주식펀드의 양도차익은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으로 신고분리과세 대상이고 주식등의 양도손익과 통산이 가능함<sup>155)</sup>
  - 양도손실은 상장주식 등의 배당과 통산 가능하며 3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음
- 공모주식투자신탁의 분배금은 상장주식의 배당금과 동일하게 과세함<sup>156)</sup>
  - 세금은 소득세율 15.315%, 주민세 5%로 원천징수하고 확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다만 종합과세로 확정신고를 하여 배당공제<sup>157)</sup>를 적용받을 수 있음

### 4) 양도손실의 처리<sup>158)</sup>

- 상장주식 등의 양도손실은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하고 일반주식 등의 양도손실은 일반주식 등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며, 공제 후에도 남는 손실은 상장

154) SMBC日興証券, 「債券の税制」, [https://www.smbcnikko.co.jp/service/tax\\_sys/bond/index.html](https://www.smbcnikko.co.jp/service/tax_sys/bond/index.html), 검색일자: 2021. 1. 19.

155) SMBC日興証券, 「投資信託の税制」, [https://www.smbcnikko.co.jp/service/tax\\_sys/inv/index.html](https://www.smbcnikko.co.jp/service/tax_sys/inv/index.html), 검색일자: 2021. 1. 19.

156) SMBC日興証券, 「投資信託の税制」, [https://www.smbcnikko.co.jp/service/tax\\_sys/inv/index.html](https://www.smbcnikko.co.jp/service/tax_sys/inv/index.html), 검색일자: 2021. 1. 19.

157) 배당공제율은 투자신탁의 외화자산비율과 주식펀입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음. 외화자산비율이 75% 초과하거나 비주식비율이 75% 초과하는 경우 배당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158) 日本 国税庁, 「No.1474 上場株式等に係る譲渡損失の損益通算及び繰越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474.htm>, 검색일자: 2021. 1. 20.

주식의 배당소득과는 통산할 수 있으나 급여소득 등 다른 소득금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음<sup>159)</sup>

- 즉 상장주식 양도소득과 일반주식 양도소득은 통산할 수 없음
  - 부동산소득 등 기타 각종 소득 유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상장주식 및 일반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 상장주식 등 금융상품 거래업자 등을 통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에 의해 당해 연도의 상장주식 배당소득 금액과 손익통산할 수 있음<sup>160)</sup>
- 손익통산하는 상장주식 배당소득은 신고분리과세를 선택한 것에 한함
    -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의 전액에 대하여 종합과세와 신고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sup>161)</sup>
  - 또한 손익통산하고도 공제하지 못한 손실금액은 이후 3년간 확정신고에 따라 상장주식 양도소득 및 상장주식 배당소득 금액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음
  - 상장주식 등에 관한 양도손실의 이월공제의 적용 순서는 우선 상장주식 등에 관한 양도소득에서 공제 후 상장주식 등에 관한 배당소득에서 공제함
-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적용하려면, 당해 연도분 확정신고서에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확정신고부표(상장주식 등에 관한 양도손실의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용)」 및 「주식등과 관련되는 양도소득 등의 금액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함<sup>162)</sup>

159) 日本 国税庁, 「No.1465 株式等の譲渡損失(赤字)の取扱い」,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465.htm>, 검색일자: 2020. 12. 14.

160) 日本 国税庁, 「No.1474 上場株式等に係る譲渡損失の損益通算及び繰越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474.htm>, 검색일자: 2020. 12. 9.

161) 日本 国税庁, 「No.1331 上場株式等の配当等に係る申告分離課税制度」,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331.htm>, 검색일자: 2020. 12. 14.

162) 日本 国税庁, 「No.1474 上場株式等に係る譲渡損失の損益通算及び繰越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474.htm>, 검색일자: 2020. 12. 9.

- 상장주식 등의 양도가 없었던 해에도 양도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필요함

## 5) 가치가 상실된 주식에 대한 특례

- 주식등을 발행한 회사의 파산으로 개인이 소유한 주식등의 가치가 상실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손실은 다른 주식등의 양도이익이나 급여소득 등 다른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sup>163)</sup>
- 그러나 특정계좌에 있던 내국법인 상장주식 등이 상장폐지가 있던 날 이후 특정관리주식 등<sup>164)</sup>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 종료 등의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주식의 양도가 있던 것으로 보아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장주식 등의 양도손실 금액으로 간주하여 당해 연도 타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다. 세율

- 상장주식 등 및 일반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20.315%임
  - 소득세 15%, 주민세 5%, 부흥특별소득세 0.315%로 구성됨
    - 부흥특별소득세는 기본소득세액에 2.1%를 적용하여 추가로 과세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2037년까지 적용함
  -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잡소득으로 구분하고 세율은 동일함

163) 日本 国税庁, 「No.1475 破産等により株式の価値が失われたときの特例」,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475.htm>, 검색일자: 2020. 12. 14.

164) 특정관리주식 등이란 상장폐지된 날 이후 계속 특정계좌를 금융상품거래업자가 개설한 특정관리계좌에 보관위탁되어 있는 주식, 2009년 1월 4일 특정관리주식이었다가 같은 달 5일에 특정관리계좌에서 인출된 것 중 이후에 양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된 주식, 특정계좌에 대한 대체계좌에 보관위탁되고 있는 공사채 등임

〈표 III-4〉 일본의 양도소득세 세율

(단위: %)

구분	~2008년 2월	2009년 1월 ~ 2013년 12월	2014년 1월부터
세율	10	원 칩: 20 경감세율: 10	20

자료: 植松利夫, 『日本の税制』, 財経詳報社, p. 114

## 라. 신고방법 및 납세절차

- 일본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투자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정계좌제도 이용 시 신고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sup>165)</sup>
  - 특정계좌제도는 2002년에 도입되었음
- 거주자 등이 금융상품 거래업자에게 특정계좌를 개설한 경우에 특정계좌에서의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특정계좌 밖에서 양도한 다른 주식등의 양도에 의한 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함<sup>166)</sup>
  - 특정계좌는 하나의 금융상품 거래업자당 하나의 계좌로 한정함
- 특정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이를 간이신고 또는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음<sup>167)</sup>
  - 간이신고 계좌의 경우, 양도소득의 계산은 금융상품 거래업자가 실시하는 것이므로 금융상품 거래업자로부터 전송되는 특정계좌 연간거래보고서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
    - 즉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연간소득 및 세액을 계산한 연간거래보고서를 작성하

165) 황세운, 「일본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세제의 특성 및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2019-14호, 자본시장연구원, 2019, p. 3

166) 日本 国税庁, 「No.1476 特定口座制度」,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476.htm>, 검색일자: 2020. 12. 8

167) 日本 国税庁, 「No.1476 特定口座制度」,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476.htm>, 검색일자: 2020. 12. 8

- 여 투자자에게 배부하면 투자자는 이를 국세청에 신고함
- 특정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특정계좌에서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음
- 다른 계좌와의 손익통산이나 손실의 이월공제를 하려면 확정신고가 필요함
- 원천징수계좌를 개설한 금융상품 거래업자 영업소를 통해 상장주식 등에 따른 배당을 지급받은 경우 상장주식 등에 대한 배당을 해당 원천징수계좌에 입금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 「원천징수 선택 계좌 내 배당 등 수입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이때 원천징수계좌에 입금되는 상장주식 등에 관련된 배당에 관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그 원천징수계좌에서의 상장주식 등 양도손실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손실을 공제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함
- 특정계좌를 개설한 거주자가 특정계좌에 있는 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해당 연도의 첫 번째 양도 시까지 금융상품거래업자에게 「특정계좌원천징수선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원천징수계좌의 선택은 연 단위로 할 수 있고 도중에 변경할 수는 없음
  - 원천징수를 선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계좌의 상장주식 등을 양도할 때마다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함
- 일반주식(비상장주식)의 과세표준 계산은 상장주식 등과 동일하지만 특정계좌는 이용할 수 없음<sup>168)</sup>
- 일반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신고납부해야 함

168) 황세운, 「일본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세제의 특성 및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2019-14호, 자본시장연구소, 2019, p. 3

## 마. 특례규정

### 1) 소액투자 비과세제도

- 일본은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라고 하는 소액투자 비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음<sup>169)</sup>
  -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펀드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나 배당에 대해 약 20%의 세율로 과세가 되지만 NISA 계좌에서 매년 일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입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비과세하는 제도임
  - 영국의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모델로 하여 도입되었음
  
- NISA에는 일반 NISA, 적립 NISA, 주니어 NISA의 세 가지 형태가 있음
  - 일반 NISA는 2014년 1월에 시작된 개인투자자에 적용되는 혜택으로, 연간 120만엔의 범위에서 5년간 비과세됨
  - 주니어 NISA는 2016년도부터 시작되었고 미성년자(0~19세)를 대상으로 연간 80만엔을 한도로 5년간 비과세됨
  - 적립 NISA는 2018년 1월 시작된 소액의 장기·적립 및 분산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비과세제도로 연간 40만엔을 한도로 20년간 비과세됨
  
- 일반 NISA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하며, 구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금융기관에 따라 달라짐
  - 증권사의 경우 상장주식, 주식투자신탁, ETF, 상장 REIT이고 은행의 경우 주식투자신탁을 구입할 수 있음
  
- NISA 제도는 가계의 안정적인 자산형성 지원 및 경제성장에 필요한 성장 자금의

169) 金融庁, 「NISAとは?」, <https://www.fsa.go.jp/policy/nisa2/about/index.html>, 검색일자: 2021. 1. 20.

확대를 목적으로 2014년 1월부터 도입되었음<sup>170)</sup>

- 2020년 9월 현재 일반 NISA 1,209만 5,813개, 적립 NISA는 274만 5,490개, 주니어 NISA는 42만 1,349개의 계좌가 운영 중임

〈표 Ⅲ-5〉 일본의 NISA제도 개요

구분	일반 NISA	적립 NISA	주니어 NISA
가입대상자 <sup>1)</sup>	20세 이상	20세 이상	0~19세
비과세 소득	대상 상품의 양도차익과 배당금·분배금		
기간	2023년 12월 말까지	2042년 12월 말까지	2023년 12월 말까지
비과세기간	5년 (기간 종료 후 이월 가능)	최대 20년 (기간 종료 후 이월 불가능)	5년 (기간 종료 후 이월 가능)
연간 비과세 매입 한도	120만엔	40만엔	80만엔
대상 상품	상장주식, 공모주식 투자신탁 등	요건을 충족하는 공모주식투자신탁 및 상장주식투자신탁(ETF)	상장주식, 공모주식투자신탁 등
중도해지	가능	가능	가능
손익통산, 손실이월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비과세한도 이월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기타	일반 NISA와 적립 NISA는 동일 연도에 병용할 수 없음		18세까지는 중도인출에 제한 있음

주: 1) 일본 거주자에 한함  
 자료: SMBC日興証券, 「NISA(ニーサ)」, <https://www.smbcnikko.co.jp/nisa/index.html>, 검색일자: 2021. 1. 21.

170) 金融庁, 「NISA制度の効果検証結果の公表について」, <https://www.fsa.go.jp/policy/nisa/20161021-1.html>, 검색일자: 2021. 1. 21.

〈표 III-6〉 NISA 계좌 이용 현황

(단위: 개, 억엔, %)

구분	일반 NISA	적립 NISA	주니어 NISA
계좌 수	12,095,813	2,745,490	421,349
매수 금액	202,060	5,613	2,245
상품별 비율	상장주식	40.9	41.4
	투자신탁	56.4	53.6
	ETF	1.8	3.9
	REIT	1.0	1.1

주: 1. 2020년 9월 말 현재 계좌 수 및 매입액임

자료: 金融庁, 「NISA・ジュニア NISA 口座の利用状況調査2020年9月末時点」, <https://www.fsa.go.jp/policy/nisa2/about/datacollection/index.html>, 검색일자: 2021. 1. 21.

## 2) 조세회피 방지규정

□ 조세회피 방지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바. 증권거래세

□ 일본은 현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일본은 1989년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정착되었다고 평가되면서 1999년부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였음<sup>171)</sup>

171) 황세운, 「일본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세제의 특성 및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2019-13호, 자본시장연구원, 2019, p. 2

### 3. 영국

#### 가. 개요

##### 1) 과세방법

- 영국은 개인의 자본이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분류과세를 적용한다고 볼 수 있음
- 자본이득과 관련한 과세대상 및 과세 규정은 1992년 「과세대상이득법(Taxation of Chargeable Gains Act 1992, TCGA92)」에서 정하고 있음

##### 2) 과세대상

- 영국은 개인이 자산을 처분하여 과세소득이 발생한 경우 처분되었거나 처분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자본이득세를 부과함<sup>172)</sup>
- 양도차익은 납세자 유형에 따라 다른 세목으로 과세하며, 개인의 자본이득에는 자본이득세가 과세됨<sup>173)</sup>
- 자산은 모든 형태의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과 유가증권, 옵션, 채무증서, 무채재산권, 파운드(sterling) 외의 통화 등이 포함됨<sup>174)</sup>
- 처분(Disposal)은 판매, 무상이전(증여, gift), 교환, 부채의 상환 등을 포함함<sup>175)</sup>
- 법률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규정하는 특정한 경우 등에도 자본이득세가 부과될

172) HMRC, "Capital Gains Tax: basic concept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gains-manual/cg10240>, 검색일자: 2020. 12. 15

173) TCGA1992, Part I Chapter1 Section1 (1) 및 (2)

174) TCGA1992, PartII Chapter II Section21 (1); HMRC, "Introduction and computation: chargeable asset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gains-manual/cg11700p>, 검색일자: 2020. 12. 15.

175) HMRC, "Disposal of asset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gains-manual/cg12700>, 검색일자: 2020. 12. 15

수 있음

- 별도로 열거하는 비과세(exemption) 대상을 제외한 주식(shares) 또는 증권(securities), 채권<sup>176)</sup> 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득은 과세대상이익(chargeable gain)에 포함됨<sup>177)</sup><sup>178)</sup>
  - 주식은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자본이득세의 과세대상임<sup>179)</sup>
  - 주식등과 관련하여 세법상 열거하고 있는 주요 비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음<sup>180)</sup>
    - 개인저축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s, ISAs) 및 개인자산계획(Personal Equity Plans, PEPs)과 같은 특정 계좌에 대한 투자
    - 국민저축증권(National Savings Certificate), 길트(gilt-edged),<sup>181)</sup> 프리미엄 채권(Premium Bonds),<sup>182)</sup> 영국정부채권(British Government Securities), 적격 회사채(qualifying corporate bonds)

176) 채권은 자본이득세 과세대상 자산이지만 대부분의 채권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예외적으로 비적격 회사채의 양도차익은 과세됨(홍범교·송은주·마정화(2012), p. 52)

177) HMRC, "Tax when you sell shares," <https://www.gov.uk/tax-sell-shares>, 검색일자: 2021. 1. 31.

178) TCGA1992, Part II Chapter1 Section15

179) 자본이득세 대상인 주식(shares)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주식회사 자본 구성원인 주주의 이익 또는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상장여부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자료: HMRC, "Definitions meaning of a share,"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gains-manual/cg50200>, 검색일자: 2021. 5. 4.; 박명호·기은선·정희선(2008), p. 113)

180) HMRC, "Introduction and computation: chargeable asset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gains-manual/cg11700p>, 검색일자: 2021. 1. 31.

181) 금테증권(gilt-edged securities) 또는 금테(gilts)라고 하며, 영국 정부의 국공채로 TCGA92/SCH9 Part II 및 재무부령에 지정된 항목(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된 항목)을 의미함(자료: HMRC, "Securities: Gilt-edged securitie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gains-manual/cg54900>, 검색일자: 2021. 2. 1.)

182) 프리미엄채권은 NS & I (National Savings and Investment)에서 발행하는 투자 상품으로, 이자나 정기적인 배당 대신 복권을 지급하는 채권으로 국채의 일종임(자료: NS&I, "Premium Bonds," <https://www.nsandi.com/products/premium-bonds>, 검색일자: 2021. 2. 1.)

## 나. 과세소득 산정

### 1) 과세대상 자본이득(chargeable gains)

- 자본이득세의 과세대상 자본이득은 양도가액에서 양도경비, 취득가액, 취득부대비용 및 개량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sup>183)</sup>

#### 가) 양도가액 산정

- 과세표준 산정 시 양도가액은 실제양도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특정 시점의 시가(Market Value)를 적용함<sup>184)</sup>
  - 「자본이득세법」상 양도가액(대가, Consideration for disposal)은 특별한 정의가 없으며 금전뿐만 아니라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부채의 면제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sup>185)</sup> 다음과 같은 가치가 포함될 수 있음
    - 현재 또는 미래에 지불할 수 있는 현금, 현금으로 교환될 수 있는 모든 대가
    - 처분한 자산과 교환하여 제공된 자산의 시가
    - 처분 금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 향후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의 가치
  - 다만 다음과 같은 특정 경우에는 실제가액이 아닌 특정일의 시가(Market Value)<sup>186)</sup>를 양도가액으로 함<sup>187)</sup>
    - 무상이전(gifts) 시, 무상이전이 발생한 날의 시가
    - 고의적인 저가양도 시, 양도일의 시가

183) TCGA1992, Part I Chapter I Section1 (3)

184) HMRC, "Market value," <https://www.gov.uk/capital-gains-tax/market-value>, 검색일자: 2021. 5. 4.; 박명호·기은선·정희선(2008), p. 88

185) HMRC, "Consideration for disposal: meaning of consideration,"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gains-manual/cg14500>, 검색일자: 2021. 2. 1.

186) 시장가치란, 공개된 시장(open market)에서 양도할 때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치를 말함(TCGA92 Part VIII Section272)

187) HMRC, "Capital Gains Tax," <https://www.gov.uk/capital-gains-tax/market-value>, 검색일자: 2021. 2. 1.

- 상속받은 자산의 가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일(사망일)의 시가
- 1982년 3월 31일 이전에 보유한 자산의 경우, 1982년 3월 31일의 시가

□ 주식 또는 증권(이하 '주식등')의 시가는 상장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함<sup>188)</sup>

- 2015년 4월 5일 이전의 상장주식 등의 경우, 2015년 4월 5일까지는 다음 (a)와 (b)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해당 일자에 매매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a)으로 함
  - (a) 1/4 up: 해당 일자의 두 가격 중 낮은 금액에 두 가격의 차액의 4분의 1을 더한 금액
  - (b) 특별가격(bargains at special prices)<sup>189)</sup>을 제외하고 해당 일자의 최고 매매가와 최저매매가의 평균
- 2015년 4월 5일 이후<sup>190)</sup> 상장주식 등의 경우, 해당 일자에 거래소의 일일 목록(Daily Official List)에 표시되는 두 가격 중 낮은 금액에 두 가격의 차액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으로 함
  - 만약 증권거래소에 거래 기록이 없는 날인 경우, 직전 일에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함
- 비상장주식 등의 경우, 일반적인 의미의 시가와 동일하게 공개된 시장(open market)에서 양도할 때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으로 함<sup>191)</sup>
  - 영국에는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평가를 점검·협상하는 부서(SAV, 증권평가과)

188) HMRC, "Valuation of quoted shares: definition of market value,"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gains-manual/cg59510>, 검색일자: 2021. 2. 1.

189) 거래소의 거래가격이 기록되는 일일 목록(Daily Official List)에 '특별가격'으로 공시되는 가격으로, 특별가격으로 거래되는 상황은 실제로 거의 발생하지 않음(자료: HMRC, "definition of market value,"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gains-manual/cg59510>, 검색일자: 2021. 2. 1.)

190) 2015년 4월 5일부터 자본이득세 목적상 「주식, 증권 및 스트립에 대한 시장가치규정(The Market Value of Shares, Securities and Strips Regulations 2015」 (SI 2015/616)이 발효됨

191) HMRC, "Valuation of unquoted shares: market value rule,"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gains-manual/cg59540>, 검색일자: 2021. 2. 1.

가 있으며, 자본이득 목적으로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SAV에 알려야 함

나) 필요경비

-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는 자산의 취득원가 및 후속개량원가(cost of subsequent improvements), 처분부대원가를 합한 금액으로 함<sup>192)</sup>
  - 처분부대원가에는 법률고문 또는 회계사 등 전문가문가에 대한 수수료, 인지세, 광고비, 자산평가비용 등이 포함됨<sup>193)</sup>
- 취득원가는 자산의 취득을 위해 발생한 금액과 그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생한 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입원가와 부수적인 비용 및 자본적 지출(cost of capital enhancements)을 포함함<sup>194)</sup>
- 다만 양도가액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특정 경우에는 실제가액이 아닌 시가를 적용해야 함<sup>195)</sup>
  - 무상이전(gifts)
  - 고의적인 저가양도
  - 상속받은 자산의 가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982년 3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sup>196)</sup>
    -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최초 취득 시점에 지불한 금액이 아닌 1982년 3월 31일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봄

192) PwC WWTS, "United Kingdom: Individual - Other taxes," <https://taxsummaries.pwc.com/united-kingdom/individual/other-taxes>, 검색일자: 2020. 12. 15.

193) TCGA1992, Part II Chapter III Section 38 (2)

194) TCGA1992, Part II Chapter III Section 38 (1)

195) HMRC, "Capital Gains Tax," <https://www.gov.uk/capital-gains-tax/market-value>, 검색일자: 2021. 2. 1.

196) TCGA1992, Section 35(1) 및 (2), Section 55 (1); HMRC, "Share valuation: 1982 holding of unquoted shares general rule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gains-manual/cg59580>, 검색일자: 2021. 2. 1.

- 즉 1982년 3월 31일 이전에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자산을 매각한 사람이 1982년 3월 31일에 해당 자산을 매각하고 즉시 재취득한 것으로 가정함

다) 주식 식별 규정(Share identification rules)

- 개인이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이러한 증감에 대하여 자본이득세 목적상 구분할 수 없는 하나의 자산(a single asset, pool)으로 취급함("section 104 holding")<sup>197)</sup>
  - 이러한 풀(pool)은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이 발생할 때마다 총가치가 조정되며, 일부 처분 시 원가는 'pool의 총가치×처분주식 수/총보유주식 수'로 계산됨
    - 예를 들어, A(개인)가 B사 보통주를 2005년에 500주(1만 5천파운드), 2010년에 1천주(2만 5천파운드)를 취득했다고 가정하는 경우, A의 B주식 pool은 1,500주(4만파운드)가 됨
    - A가 2011년에 300주를 매각하고, 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한 B사 보통주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40,000 \times 300 / 1,500 = 8$ 천파운드로 계산됨
- 2008년 4월 6일 이후부터 개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원가를 계산함<sup>198)</sup>
  - 양도한 날과 같은 날 취득한 주식은 가장 먼저 처분한 것으로 봄(the 'same day' rule)
    - 동일한 사람이 동일 종목의 주식을 같은 날에 매입하고 처분하는 거래는 단일

197) TCGA1992, Section 104(1): Any number of securities of the same class acquired by the same person in the same capacity shall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be regarded as indistinguishable parts of a single asset growing or diminishing on the occasions on which additional securities of the same class are acquired or some of the securities of that class are disposed of.

198) HMRC, "Guidance: HS284 Shares and Capital Gains Tax(202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hares-and-capital-gains-tax-hs284-self-assessment-helpsheet/hs284-shares-and-capital-gains-tax-2020#rule>, 검색일자: 2021. 2. 2.

거래로 간주함<sup>199)</sup>

- 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기존에 보유한 주식(Section 104 holding)보다 먼저 처분한 것으로 봄(the ‘bed and breakfasting’ rule)<sup>200)</sup>
  - 동종주식(same class)을 동일자격(same capacity)으로 처분한 후 30일 이내 취득한 경우에 적용함<sup>201)</sup>
- 양도일 및 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한 주식이 없거나 그보다 많은 경우 양도일의 전날까지 취득한 주식(Section 104 holding)을 처분한 것으로 봄
- A가 B주식을 2,500주(1만 2,500파운드) 보유하고 있으며, 3월 27일(양도일)에 1,700주를 9,500파운드에 매각하고 같은 날 B주식을 300주(1,200파운드) 취득, 3월 30일에 500주(3,000파운드)를 추가 매입한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음
  - ① 양도일에 취득한 300주(same day) ② 3월 30일 취득한 500주(bed and breakfasting) ③ 기존에 보유한 주식 중 800주(Section 104 holding)를 순서대로 양도한 것으로 봄
  - 자본이득 계산 시 주식의 취득원가는 ① 1,200 + ② 3,000 + ③  $12,500 \times 800 / 2500 = 8,200$ 파운드로 계산됨

## 2) 자본손실의 처리<sup>202)203)</sup>

### 가) 손익통산

□ 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연도의 자본이득에서 허용 가능한 자본손실을 공제

199) TCGA 1992, Section105(1)(a).

200) TCGA 1992, Section106A(5); 106(5A)

201) HMRC, “Share identification rules for capital gains tax from 6.4.2008: the “same day” and “bed and breakfast” identification rule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gains-manual/cg51560>, 검색일자: 2021. 2. 1.

202) HMRC, “Individuals: Losses: assessment,”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gains-manual/cg21500>, 검색일자: 2021. 2. 1.

203) HMRC, “Losses: allowable losse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gains-manual/cg15800>, 검색일자: 2021. 2. 1.

할 수 있음

- 자본손실이 발생한 해에 국세청에 신청(claim)한 금액에 한하여 허용 가능한 손실로 인정함<sup>204)</sup>
- 과세대상 자본이득에서 허용 가능한 손실을 공제하기 위한 별도의 청구 양식 또는 절차는 없으며, 자본이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계산에 반영하면 됨
- 자본손실을 공제한 후 순이익이 연간 면제금액 미만으로 낮아지더라도 자본손실의 일부 금액만을 공제하거나 이월할 수는 없음

나) 이월공제(소급공제) 여부

- 순자본손실은 금액과 기간의 제한 없이 이월공제(deduction in later year)가 가능하지만, 소급공제는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순자본손실 등의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하지 않음<sup>205)</sup><sup>206)</sup>
- 이월된 자본손실을 공제하는 경우 순이익(net gains, 당기 손실 공제 후)이 연간 면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월된 손실을 사용할 수 있음<sup>207)</sup>

### 3) 과세표준(Taxable amount of gains) 산정

- 자본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자본이득(chargeable gains)에서 당기 공제가 능손실, 연간면제금액, 이월결손금 및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함<sup>208)</sup>

204) TCGA1992, Section16 (2A)

205) TCGA1992, Section62 (2); HMRC, "Death and Personal Representatives: Liability to the date of death: Losses and annual exemption,"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gains-manual/cg30430>, 검색일자: 2021. 2. 1.; 홍범교·김진수(2010), p. 72

206) HMRC, "Capital Gains Manual,"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gains-manual/cg15800>, 검색일자: 2021. 2. 1.

207) HMRC, "Individuals: Losses: assessment,"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gains-manual/cg21500>, 검색일자: 2021. 2. 1.

208) HMRC, "Capital Gains Tax summary notes(2020-21),"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74133/SA108\\_English\\_Notes\\_2021.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74133/SA108_English_Notes_2021.pdf), 검색일자: 2021. 5. 4.; 박명호·기은선·정희선(2008), p. 87

- 개인의 자본이득은 연간면제금액(Annual Exempt Allowance, AEA)까지 자본이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는 매년 소비자지수를 반영하여 결정됨
- 2020~2021년 연간 면제금액은 1만 2,300파운드(신탁의 경우 6,150파운드)임<sup>209)</sup>
  - 즉 주식을 포함한 자본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연간면제금액까지는 자본이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표 III-7〉 자본이득 연간 비과세 기준금액

(단위: 파운드)

구분	2015~16년	2016~17년	2017~18년	2018~19년	2019~20년	2020~21년
개인 등 <sup>1)</sup>	11,100	11,100	11,300	11,700	12,000	12,300
피신탁인 등 <sup>2)</sup>	5,550	5,550	5,650	1,850	6,000	6,150

주: 1) 개인, 상속대리인(personal representatives for a deceased person's estate), 장애인의 피신탁인(trustees for disabled people)  
 2) 그 외의 피신탁인  
 자료: HMRC, "Capital Gains Tax rates and allowances," <https://www.gov.uk/guidance/capital-gains-tax-rates-and-allowances#aea-limits>, 검색일자: 2021. 2. 2.

- 영국에는 주식등을 양도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제(Relief)제도가 존재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마. 과세특례(비과세, 감면 등)'에서 후술함
- 대표적인 공제제도에는 사업자공제(Business Asset Disposal Relief, (구)Entrepreneurs' Relief), 투자자공제(Investors' Relief, IR)제도 등이 있음<sup>210)</sup>
  - 이러한 공제 규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평생 한도금액(Lifetime limit)까지는 유효세율이 10%가 될 수 있도록 자본이득의 일부를 공제하여 주는 제도임

209) HMRC, "Guidance: Capital Gains Tax rates and allowances," <https://www.gov.uk/guidance/capital-gains-tax-rates-and-allowances#aea-limits>, 검색일자: 2020. 12. 15.

210) KPMG, "UK - Income Tax,"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11/12/united-kingdom-income-tax.html>, 검색일자: 2021. 2. 2.

## 다. 세율

- 개인의 자본이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종합소득과 자본소득의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 또는 20%의 세율이 적용됨<sup>211)</sup>
  -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total amount of taxable income)<sup>212)</sup>에 ② 자본이득을 더한 금액이 종합소득의 기본세율구간(basic rate band) 내에 있는 경우 10%, 해당 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20% 세율을 적용함<sup>213)</sup>
    - 기본세율구간은 법률에 따르며, 2019~2020 과세연도에 기본세율구간을 적용 받는 과세표준 상한금액은 3만 7,500파운드임<sup>214)</sup>
    - 예를 들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2만파운드이고, 과세대상 자본이득이 1만 5천 파운드인 납세자의 경우 먼저 자본이득 기본공제 1만 2,300파운드를 제외하면 공제 후 자본이득은 2,700파운드이고, 이를 과세소득에 더하면 2만 2,700파운드로 기본세율 적용 구간에 있으므로 10%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수탁자(trustees) 또는 대리인(personal representatives)의 경우 2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함
  - 사업자공제(Business Asset Disposal Relief)<sup>215)</sup> 및 투자자공제(Investors'

211) 2016. 4. 6. 이후 양도분에 적용되는 세율임(자료: HMRC, "Capital Gains Tax rates and allowances," <https://www.gov.uk/guidance/capital-gains-tax-rates-and-allowances#aea-limits>, 검색일자: 2020. 12. 15.)

212)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및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함(홍범교·송은주·마정화(2012), p. 57)

213) 영국의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기본세율(Basic rate), 고세율(Higher rate), 추가세율(Additional rate)로 구분됨(자료: HMRC, "Income Tax rates and allowances for current and past years-Tax rates and band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ates-and-allowances-income-tax/income-tax-rates-and-allowances-current-and-past>, 검색일자: 2020. 12. 15.)

214)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 1만 2,500파운드(2020/21 기준) 차감 후 과세표준 금액임(자료: HMRC, "Income Tax rates and Personal Allowances," <https://www.gov.uk/income-tax-rates>, 검색일자: 2020. 12. 15.)

215) 기존의 사업자공제(entrepreneurs' relief)와 동일한 것으로 2020년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금융법(Finance Act)」에서 개칭됨(자료: HMRC, "Business Asset Disposal Relief: broad outline,"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gains-manual/cg63955>, 검색일자: 2020. 12. 15)

Relief)가 적용되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다른 자본소득과 구분하여 10%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자본이득세율은 2008년 이후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연도별 자본이득세율은 <표 III-8>과 같음

<표 III-8> 2008년 이후 자본이득세 세율

(단위: %)

구분		2008. 4. 6. <sup>1)</sup> ~ 2010. 4. 5.	2010. 4. 6. ~ 2016. 4. 5.	2016. 4. 6. 이후
개인	기본세율구간	18	18	10
	기본세율구간 초과		28	20
수탁자 및 대리인			28	20
사업자공제가 적용되는 양도차익			10	10

주: 1. 영국은 개인 소득세 부과 시 기본세율(Basic rate) 납세자(20%), 고세율(Higher rate) 납세자(40%), 추가세율(Additional rate) 납세자(45%)로 구분  
 2. 주거용 부동산(residential property)에 대해서는 18%, 28%의 자본이득세율을 적용하나, 주식 등에 대해서는 2016년 과세연도부터 세율을 8%p 인하함  
 1) 2008년 자본이득세제 간소화에 따라 18% 단일세율로 개정되었으며, 그 이전 기간 동안 세율 변화는 다음과 같음(홍범교·김진수(2010), pp. 66~72)  
 - 1962년, 단기양도차익을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 1965년, 「재정법(The Finance Act)」에 의해 1년을 기준으로 장·단기를 구분하고, 단기양도차익은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고 장기양도차익에 대해서도 30% 단일세율로 과세  
 - 1971년, 장단기 구분 없이 모든 양도차익에 대하여 30% 단일세율로 분리하여 과세  
 - 1988년, 자본이득과 일반소득을 합산하여 단계적 누진세율(25%, 40%)로 과세(종합과세)  
 자료: HM Custom&Revenue, "Guidance: Capital Gains Tax rates and allowances," <https://www.gov.uk/guidance/capital-gains-tax-rates-and-allowances>, 검색일자: 2020. 12. 15

### 라. 신고방법 및 납세절차<sup>216)</sup>

- 자본이득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자본이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이익이 발생한 해에 즉시 신고·납부하거나 과세연도의 자진신고(Self Assessment, SA)시스템<sup>217)</sup>에 따라 신고할 수 있음

216) HMRC, "Capital Gains Tax," <https://www.gov.uk/capital-gains-tax/report-and-pay-capital-gains-tax>, 검색일자: 2021. 2. 1.

- 과세대상 자본이득이 연간 면제금액 이하인 자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금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sup>218)</sup>
  - 양도한 자산의 총액이 연간 면제금액의 4배 이상인 경우
  - 자진신고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과세대상 자산에서 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이 발생한 연도의 신고서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손실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청구할 수 있음<sup>219)220)</sup>
- 납세자가 미리 납부할 자본이득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자본이득세 신고 서비스(real time CGT service)를 이용하여 즉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한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함
- 자진신고를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 예정신고제도는 없으며 개인의 경우 과세기간 동안 자산양도 거래에서 얻은 자본이득 또는 손실을 모두 합산하여 1년에 한 번 신고함<sup>221)</sup>
  - 온라인을 통한 전자신고 또는 서면제출 가능하며, 서면제출의 경우 서면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sup>222)</sup>
  - 개인의 과세기간은 매년 4월 6일부터 다음 해 4월 5일이며, 다음 해의 10월 5

217) 자진신고(Self Assessment, SA)는 영국 국세청이 소득세를 징수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근로·연금·저축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만, 그 외의 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는 과세연도 종료일(4월 5일) 이후 자진신고 의무가 있음(자료: HMRC, "Self Assessment tax returns," <https://www.gov.uk/self-assessment-tax-returns>, 검색일자: 2021. 2. 2.)

218) HMRC, "Capital Gains Tax," <https://www.gov.uk/capital-gains-tax/work-out-need-to-pay>, 검색일자: 2021. 2. 1.

219) HMRC, 위와 동일

220) KPMG, "UK - Income Tax,"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11/12/united-kingdom-income-tax.html>, 검색일자: 2021. 2. 2.

221) HMRC, "Self Assessment tax returns," <https://www.gov.uk/self-assessment-tax-returns/deadlines>, 검색일자: 2021. 5. 4.; 박명호·기은선·정희선(2008), p. 105

222) 서면신고 시 SA100(The main tax return) 및 SA108(Capital Gains tax return) 양식을 작성하여 신고하여 제출해야 함(자료: HMRC, "Self Assessment forms and helpsheets," <https://www.gov.uk/self-assessment-forms-and-helpsheets>, 검색일자: 2020. 12. 17.)

일까지 자진신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서면신고 시 다음 해 10월 31일까지, 전자신고 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임
- 즉 2019~2020 과세연도(2019년 4월 6일부터 2020년 4월 5일)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경우, 자진신고 등록기간은 2020년 10월 5일, 서면신고 기한은 2020년 10월 31일, 전자신고 기한 및 납부기한은 2021년 1월 31일임

〈표 III-9〉 자진신고(Self-Assessment) 신고·납부기한

구분	기한(Deadline)
자진신고 등록기간	10월 5일
서면신고(Paper tax returns)	10월 31일
전자신고(Online tax returns)	1월 31일
세액 납부기한	1월 31일

자료: HM Custom & Revenue, <https://www.gov.uk/self-assessment-tax-returns/deadlines>, 검색일자: 2020. 12. 17.

- 납세자가 자본이득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은 납부세액 및 납부방법에 대한 안내 통지를 발송함

## 마. 특례규정

### 1)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저축계좌)

- 영국은 1999년부터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ISA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sup>223)</sup>
- 영국 ISA제도는 기존에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ISA로 일원화시키는 특징이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영국의 제도를 모델로 ISA를 도입하였음

223) 김재철(2013), p. 3

- ISA는 연간 한도 내에서 납입 가능하며, 가입기간 동안 예·적금 및 증권, 펀드, 기타 금융투자상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세와 자본이득세를 전액 비과세함<sup>224)</sup>
  - 연간 납입한도는 2020년 현재 기준으로 2만파운드이며, ISA 유형별로 별도의 연간 납입한도가 존재함
    - 연간 납입한도는 물가에 연동하여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며, 한 유형의 계좌에 2만파운드를 납입하거나 다른 유형의 계좌에 일부 분할하는 것도 가능함<sup>225)</sup>
  - ISA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전액 비과세이나, 자본손실은 공제할 수 없음
  
- 영국의 ISA는 예금형 ISA(Cash ISA), 주식형 ISA(stocks and shares ISA), IF ISA(Innovative Finance ISA), Lifetime ISA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sup>226)</sup> 18세 미만 개인을 위한 Junior ISA 등 다양한 상품이 존재함<sup>227)</sup>
  - 예금형 ISA에는 예·적금, MMF, 국가저축상품(National Savings and Investment)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주식형 ISA에는 상장주식, 펀드, 회사채 및 국채(government bonds) 등에 투자할 수 있음
  - IF ISA는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2016년에 도입되었으며, P2P(peer-to-peer) 대출 또는 크라우드펀딩 부채가 포함될 수 있음
  - Lifetime ISA는 노후자금 및 주택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2017년에 도입되었으며 예금형 ISA와 주식형 ISA로 구성 가능함
  - Junior ISA는 미성년자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1년 도입되었으며, 예금형 ISA와 주식형 ISA로 구성 가능함
  
- ISA는 영국의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ISA 유형에 따라 가입연령 및 납입한도에 차이가 있음<sup>228)</sup>

224) IBFD,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_resolver/static/ita\\_uk\\_s\\_1.&refresh=1612443832376#ita\\_uk\\_s\\_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_resolver/static/ita_uk_s_1.&refresh=1612443832376#ita_uk_s_1.), 검색일자: 2021. 2. 4.

225) HMRC, "Individual Savings Accounts (ISAs)," <https://www.gov.uk/individual-savings-accounts/how-isas-work>, 검색일자: 2021. 2. 4.

226) HMRC, "Individual Savings Accounts (ISAs)," <https://www.gov.uk/individual-savings-accounts/how-isas-work>, 검색일자: 2021. 2. 4.

227) 정원석·마지혜(2017), pp. 8~12

- 예금형 ISA는 16세 이상, 주식형 ISA와 Innovative Finance ISA는 18세 이상의 영국 거주자이면 가입할 수 있음
  - Lifetime ISA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거주자인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50세까지 매년 4천파운드 한도(연간 납입한도 2만파운드에 포함) 내에서 납입 가능함<sup>229)</sup>
  - Junior ISA는 만 18세 미만의 개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한도는 2020~2021년 기준으로 9천파운드임
- 일반적으로 세제 불이익이 없이 ISA에서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며, 다만 Junior ISA와 Lifetime ISA는 별도 제한이 있음
- Junior ISA는 18세 이전에 인출할 수 없음<sup>230)</sup>
  - Lifetime ISA는 최초 주택 구매 목적이거나, 60세 이후 또는 불치병에 걸린 경우에만 인출 가능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무단인출, unauthorised withdrawal)에는 25%의 인출 수수료가 부과됨<sup>231)</sup>
    - 최초 주택 구매 목적의 경우, 45만파운드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고 최소 가입 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여야 인출 가능함<sup>232)</sup>

228) HMRC, "Individual Savings Accounts (ISAs)," <https://www.gov.uk/individual-savings-accounts>, 검색일자: 2021. 2. 4.

229) HMRC, "Lifetime ISA," <https://www.gov.uk/lifetime-isa>, 검색일자: 2021. 2. 4.

230) HMRC, "Junior Individual Savings Accounts (ISA)," <https://www.gov.uk/junior-individual-savings-accounts>, 검색일자: 2021. 2. 4.

231) HMRC, "Individual Savings Accounts (ISAs)," <https://www.gov.uk/individual-savings-accounts/withdrawing-your-money>, 검색일자: 2021. 2. 4.

232) IBFD,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_resolver/static/ita\\_uk\\_s\\_1.&refresh=1612443832376#ita\\_uk\\_s\\_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_resolver/static/ita_uk_s_1.&refresh=1612443832376#ita_uk_s_1.), 검색일자: 2021. 2. 4.

## 2) 특정 주식에 대한 공제제도

가) 사업자공제(Business Asset Disposal Relief,<sup>233)</sup> formerly Entrepreneurs' relief)<sup>234)</sup>

- 2010년 6월 23일 이후 발생한 특정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유효세율이 10%가 되도록 자본이득을 공제할 수 있음<sup>235)</sup>
- 특정 주식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식을 의미하며, 양도일 직전 2년<sup>236)</sup> 동안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사업자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sup>237)238)</sup>
  - 주식을 양도하는 개인은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직원 또는 임원(office holder)이어야 함
  - 개인이 회사의 ①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의 5%를 보유하고 ② 회사의 배당 가능 이익, 해산 시 분배금 또는 청산 시 매각대금의 5%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함(personal company 주식)
    - 다만 ② 요건은 2018년 10월 29일 이후부터 적용됨
  - 발행 주식의 회사는 상업회사(trading company)<sup>239)</sup> 또는 상업그룹의 지주회사

233) 2020년 4월 6일 이전까지 Entrepreneurs' Relief로 알려져 있었으나, 「재정법(Finance Act)」에 의해 그 명칭이 Business Asset Disposal Relief로 변경됨(자료: HMRC, "Business Asset Disposal Relief: scope and layout of guidance,"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gains-manual/cg63950>, 검색일자: 2021. 2. 2.)

234) HMRC, "Business Asset Disposal Relief," <https://www.gov.uk/business-asset-disposal-relief>, 검색일자: 2021. 2. 2.

235) 사업자공제는 사업용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개인이 직접 또는 파트너십으로 보유하는 사업 자산의 양도 등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본 연구의 목적상 '주식 및 증권의 양도'에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명함

236) 2019년 4월 6일 이전에는 '1년'이었음(HMRC, "Guidance: HS275 Entrepreneurs' Relief (202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ntrepreneurs-relief-hs275-self-assessment-helpsheet/hs275-entrepreneurs-relief-2020#individuals>, 검색일자: 2021. 2. 2.)

237) HMRC, "Business Asset Disposal Relief," <https://www.gov.uk/business-asset-disposal-relief>, 검색일자: 2021. 2. 2.

238) HMRC, "Guidance: HS275 Entrepreneurs' Relief (202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ntrepreneurs-relief-hs275-self-assessment-helpsheet/hs275-entrepreneurs-relief-2020#Qualifying-conditions>, 검색일자: 2021. 2. 2.

(holding company of a trading group)<sup>240)</sup>에 해당함

- 만약 회사가 상업회사 또는 상업그룹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경우, 제외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함<sup>241)</sup>

- 사업자공제는 일생 동안 적용되는 한도금액(평생한도, Lifetime limit)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2011년 4월 6일부터 2020년 3월 10일까지는 1천만파운드였으나 2020년 3월 1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자본이득의 평생한도는 100만파운드로 축소됨
    - 따라서 만약 2020년 3월 11일 이전에 공제받았던 자본이득이 100만파운드를 초과한 경우에는 향후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자공제의 평생한도의 변동 내역은 <표 III-10>과 같음

<표 III-10> 처분시점별 사업자공제(Entrepreneurs' relief) 한도

처분시점	평생 한도(Lifetime limit)
2008년 4월 6일 ~ 2010년 4월 5일	100만파운드
2010년 4월 6일 ~ 2010년 6월 22일	200만파운드
2010년 6월 23일 ~ 2011년 4월 5일	500만파운드
2011년 4월 6일 ~ 2020년 3월 10일	1천만파운드
2020년 3월 11일 이후	100만파운드

자료: HMRC, "Business Asset Disposal Relief: broad outline,"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gains-manual/cg63955>, 검색일자: 2021. 2. 2.

239) 상업회사(trading company)란, 투자(investment) 또는 비상업(non-trading)회사가 아닌 상업적인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전체 사업에서 비상업적 활동의 비중이 거의 포함되지 않는 회사를 의미함(TCGA 1992, Sections 165A (3))

240) 하나 이상의 상업회사를 51% 자회사로 가진 회사 등을 의미함(TCGA 1992, Sections 165A)

241) 예를 들어 B회사가 20년 동안 임원으로 근무한 A(주식 20% 보유)가 2019년 9월에 해당 주식을 처분한 경우, B회사가 2017년 8월부터 상업회사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A가 처분한 B주식으로부터 발생한 자본이득은 사업자 공제대상임(HMRC, "Guidance: HS275 Entrepreneurs' Relief (202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ntrepreneurs-relief-hs275-self-assessment-helpsheet/hs275-entrepreneurs-relief-2020#individuals>, 검색일자: 2021. 2. 2.)

- 평생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적격자산의 자본이득은 원래의 자본이득세율(10% 또는 20%)을 적용함<sup>242)</sup>
  - 다만 연간면제금액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며, 높은 세율을 적용받은 자본이득부터 면제함
  
- 사업자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격자산의 처분이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 후 도래하는 1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함<sup>243)</sup>
  - 즉 2019~2020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함

#### 나) 투자자 공제(Investor's relief)

- 투자자 공제는 적격(Qualifying)주식에 대하여 투자하는 개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3월 17일부터 도입된 공제 제도임<sup>244)</sup>
  - 적격주식이란 다음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의미함<sup>245)</sup><sup>246)</sup>
    - 2016년 3월 17일 이후에 발행된 주식을 개인이 청약하고 발행 시점에 전액 현금으로 납입한 경우("subscribe")<sup>247)</sup>

242) HMRC, "Guidance: HS275 Entrepreneurs' Relief (202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ntrepreneurs-relief-hs275-self-assessment-helpsheet/hs275-entrepreneurs-relief-2020#How-the-relief-is-calculated>, 검색일자: 2021. 2. 2.

243) HMRC, "Guidance: HS275 Entrepreneurs' Relief (202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ntrepreneurs-relief-hs275-self-assessment-helpsheet/hs275-entrepreneurs-relief-2020>, 검색일자: 2021. 2. 2.

244) HMRC, "Investors' Relief: meaning of subscribe,"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gains-manual/cg63530>, 검색일자: 2021. 2. 2.

245) HMRC, "Investors' Relief: meaning of subscribe,"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gains-manual/cg63530>, 검색일자: 2021. 2. 2.

246) HMRC, "Investors' Relief: Qualifying shares, potentially qualifying shares and excluded share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gains-manual/cg63520>, 검색일자: 2021. 2. 2.

247) 투자자 공제 목적의 주식 '취득(subscribe)'이란, 회사가 전액 현금 납입을 조건으로 발행한 주식을 개인이 직접 주식을 청약하고 발행 시점에 현금을 전액 납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 공제를 받을 수 없음(자료: HMRC, "Investors' Relief: meaning of subscribe,"

- 주식 발행시점과 주식의 보유기간 내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unlisted)<sup>248)</sup> 상업회사(trading company)의 보통주식(ordinary shares)
- 투자자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connected person)가 주식 보유기간 동안 주식 발행 회사와 관련된 직원이 아님
- 정상가격(bargain at arm's length)으로 발행된 주식
- 발행일<sup>249)</sup>로부터 최소 3년 동안 보유한 주식

□ 사업자 공제와 동일하게 적격주식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하여 유효세율이 10%가 되도록 자본이득을 공제할 수 있으며,<sup>250)</sup> 평생한도(Lifetime limit)는 2020~2021년 기준으로 1천만파운드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sup>251)</sup>

### 3) 특정 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감면

가) EIS(Enterprise Investment Scheme, 기업투자제도)

□ EIS는 소규모 비상장기업으로 위험 부담이 큰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조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벤처기업 설립을 촉진 및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 도입된 제도임<sup>252)</sup>

---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gains-manual/cg63530>, 검색일자: 2021. 2. 2.)

248) 상장되지 않은(unlisted) 주식은 런던 증권거래소 또는 해외에서 공인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의미함(자료: HMRC, "Tax when you sell shares," <https://www.gov.uk/tax-sell-shares/relief>, 검색일자: 2021. 2. 2.)

249) 주식이 2016년 3월 17일부터 4월 5일 사이에 발행된 경우는 발행일이 아닌 2016년 4월 6일부터 3년간 보유해야 함(Transitional Rules)

250) HMRC, "Investors' Relief: Introduction and layout of guidance,"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gains-manual/cg635000>, 검색일자: 2021. 2. 2.

251) HMRC, "Guidance: Investors' Relief 2020 (HS308),"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vestors-relief-2020-hs308/hs308-investors-relief-2020#what-investors-relief-means>, 검색일자: 2021. 2. 2.

252) 영국 벤처캐피탈, "All you need to know about the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https://www.syndicatoroom.com/eis#what-is-eis>, 검색일자: 2021. 5. 4.; 박명호·기은선·정

- 적격기업, 적격주식, 적격투자자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개인의 소득세를 공제하며, 해당 투자주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sup>253)</sup>
- 적격기업이란, 주식 발행시점에 비상장회사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사를 의미함
- 적격사업(일반적으로 상업(trading) 또는 연구·개발업)을 수행함
  - 주식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2년 내에 적격사업 활동에 사용되어야 하며, 일정기간<sup>254)</sup> 동안 투자자에게 반환되는 자금이 없어야 함
  - 총자산<sup>255)</sup> 규모가 주식이 발행되기 전 기준으로 1,500만파운드, 주식 발행 후 기준으로 1,600만파운드 이하인 회사
- 적격주식이란, 보통주로서 투자자가 최초 발행한 주식을 전액 현금으로 납입한 주식을 의미함
- 적격 투자자란, 해당 투자주식을 최소 3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의미함
-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은 투자금액으로, 양도시점까지 해당 소득세 공제금액에 모두 철회되지 않아야 함
  - 주식발행회사의 직원이 아니며, 상당한 이해관계(substantial interest)<sup>256)</sup>가 존재하지 않음

---

희선(2008), pp. 119~120

253) IBFD,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_resolver/static/gthb\\_uk\\_s\\_1.6.&refresh=1611991625980#gthb\\_uk\\_s\\_1.7.1.5.](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_resolver/static/gthb_uk_s_1.6.&refresh=1611991625980#gthb_uk_s_1.7.1.5.), 검색일자: 2021. 2. 2.

254) 일정 기간이란, 주식발행일 이전 12개월부터 주식발행일과 적격사업 개시일 중 늦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255) 회사가 모회사인 경우 전체 그룹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함

256) 상당한 이해관계는 회사가 청산할 경우 자산의 30%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나) SEIS(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초기 기업투자제도)<sup>257)</sup>

- SEIS는 소규모 비상장기업으로 위험 부담이 큰 사업 초기단계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2년 4월 6일 도입된 제도로, 적격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혜택을 부여함<sup>258)</sup>
- 상기 '가) EIS'와 마찬가지로 적격기업, 적격주식, 적격투자자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개인의 소득세를 공제하며, 해당 투자주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
- 적격기업이란, 2012년 4월 6일 이후 주식을 발행한 비상장회사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사를 의미함
  - 회사는 적격사업을 수행하는 상업회사(trading company)로, 투자 자금은 3년 이내 적격사업 활동에 사용되어야 함
  - 주식 발행 이전 자산총액이 20만파운드 이하이며, 주식 발행 시점의 정규직 직원이 25명을 초과하지 않는 회사
- 적격주식과 적격투자자 요건은 EIS와 동일함<sup>259)</sup>

다) SI Relief(Social Investment Tax Relief, SITR)<sup>260)</sup>

- SI Relief는 2014년 4월 6일 이후 및 2021년 4월 6일 이전에 적격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인의 투자에 대하여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임<sup>261)</sup>

257) IBFD,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_resolver/static/gthb\\_uk\\_s\\_1.6.&refresh=1611991625980#gthb\\_uk\\_s\\_1.7.1.5.2.](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_resolver/static/gthb_uk_s_1.6.&refresh=1611991625980#gthb_uk_s_1.7.1.5.2.), 검색일자: 2021. 2. 2.

258) ITA 2007, Sections 257A

259) TCGA 1992, Section 150E(2)(a); ITA 2007, 257AC(2)

260) sections 257J to 257TE of ITA 2007

261) IBFD,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_resolver/static/gthb\\_uk\\_s\\_1.6.&refresh=1611991625980#gthb\\_uk\\_s\\_1.7.1.5.3.](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_resolver/static/gthb_uk_s_1.6.&refresh=1611991625980#gthb_uk_s_1.7.1.5.3.), 검색일자:

-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Community Interest companies(CIC), 공인된 자선단체, 자선단체가 아닌 Community Benefit Societies, 기타 규정된 기관 등을 의미함
- 적격기업, 적격주식, 적격투자자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개인의 소득세를 공제하며, 해당 투자주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sup>262)263)</sup>
  - 적격기업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함
    - 적격활동(Qualifying trades)<sup>264)</sup>을 수행하는 회사
    - 투자를 받은 후 2년 이내 적격활동을 시작하고 투자자금을 모두 해당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
    - 총자산<sup>265)</sup> 규모가 투자 전 기준으로 1,500만파운드 미만, 투자 후 기준으로 1,600만파운드 미만인 회사
    - 주식 발행 시점의 정규직 직원이 500명을 초과하지 않는 회사
    - 투자 이후 3년 이내 다른 회사의 지배를 받거나 적격기업이 아닌 자회사를 보유하는 경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파트너십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적격주식이란, 보통주로서 투자자가 최초 발행한 주식을 전액 현금으로 납입한 주식을 의미함
  - 적격 투자자란, 해당 투자주식을 최소 3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의미함

---

2021. 2. 2.

262) IBFD,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_resolver/static/gthb\\_uk\\_s\\_1.6.&refresh=1611991625980#gthb\\_uk\\_s\\_1.7.1.5.3.](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_resolver/static/gthb_uk_s_1.6.&refresh=1611991625980#gthb_uk_s_1.7.1.5.3.), 검색일자: 2021. 2. 2.

263) HMRC, "Guidance: Use SITR to raise money for your social enterprise," <https://www.gov.uk/guidance/venture-capital-schemes-apply-to-use-social-investment-tax-relief#how-to-apply>, 검색일자: 2021. 2. 3.

264) 상업적(commercially)으로 거래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대부분의 거래 활동을 의미하며, 임대업, 부동산개발업, 선물·주식등의 금융상품 투자업, 은행·보험업, 농·어업 등은 적격 거래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265) 회사가 모회사인 경우 전체 그룹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함

-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은 투자금액으로, 양도시점까지 해당 소득세 공제금액에 모두 철회되지 않아야 함
- 회사 및 자회사(연결된 기업)의 직원, 파트너, 수탁자 또는 보수 이사(paid director)가 아닌 투자자

라) VCT(Venture capital trust Scheme, 기업벤처제도)<sup>266)267)</sup>

- VCT(Venture capital trust)는 소규모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당국(HMRC)으로부터 승인받은 VCT를 통해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임<sup>268)</sup>
  - VCT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거나 자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상장된 투자 신탁회사로, 투자가 가능한 기업 및 투자비율 등 다양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국세청(HMRC)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VCT가 국세청(HMRC)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한 핵심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열거된 항목 외의 다른 조건도 존재함<sup>269)</sup>
  - 증권시장에 상장되어야 함(listing condition)
  - 수입의 전부 또는 대부분<sup>270)</sup>이 주식 또는 증권으로부터 발생해야 함(nature of

266) IBFD,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_resolver/static/gthb\\_uk\\_s\\_1.6.&refresh=1611991625980#gthb\\_uk\\_s\\_1.7.1.5.4.](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_resolver/static/gthb_uk_s_1.6.&refresh=1611991625980#gthb_uk_s_1.7.1.5.4.), 검색일자: 2021. 2. 2.

267) HMRC, "Guidance: Tax relief for investors using venture capital schemes," <https://www.gov.uk/guidance/venture-capital-schemes-tax-relief-for-investors#wont-get-tax-relief-on-investments>, 검색일자: 2021. 2. 3.

268) HMRC, "VCT: overview of the VCT scheme,"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enture-capital-schemes-manual/vcm50010>, 검색일자: 2021. 2. 3.

269) HMRC, "VCT approval: conditions for full approval,"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enture-capital-schemes-manual/vcm54020>, 검색일자: 2021. 2. 3.

270) 일반적으로 수입의 70% 이상이 주식 또는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자료: HMRC, "Venture Capital Schemes Manual: nature of the income condition,"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enture-capital-schemes-manual/vcm54050>, 검색일자: 2021. 2. 3.)

income condition)

- 유보이익 총수입의 15% 이상을 초과하지 않음(15% holding limit condition)
  - 한 회사에 전체 투자금액의 15% 이상을 투자하지 않음(15% holding limit condition)
  - 전체 투자금액의 70% 이상(2019년 4월 6일 이후부터 80%)을 적격주식 또는 증권에 투자해야 함(70% qualifying holdings condition)
  - 적격자산 외의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허용된 투자범위 및 최소투자금액을 유지해야 하며 이후 회계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함
- 18세 이상의 개인이 투자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개인의 소득세를 공제하며, VCT를 통한 투자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자본이득세가 면제됨<sup>271)</sup>
- 투자(취득) 및 양도시점에 모두 승인받은 VCT에 해당하여야 함
  -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상업 목적(commercial purpose)의 거래에 해당함<sup>272)</sup>
- 자본이득 면제혜택은 연간 취득금액 20만파운드(2003~2004년 이전까지는 10만 파운드)까지 가능하며, 허용된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취득한 주식부터 자본이득세 감면 대상 주식에 포함함<sup>273)</sup>

#### 4) 조세회피 방지 규정: TAAR(Targeted Anti-Avoidance Rule)<sup>274)</sup>

- 영국에는 주식의 ‘bed and breakfasting’(매각과 단기 환매)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271) TCGA 1992, Section 151A (1), (2)

272) 원래 면제대상이 아닌 주식을 VCT로 전환함으로써 조세혜택을 취하려고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영국 국세청의 관련 부서(CT Innovation & Growth Team)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음

273) HMRC, “CT: investor CG disposal relief: exemption from CGT,”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enture-capital-schemes-manual/vcm52020>, 검색일자: 2021. 2. 3.

274) HMRC, “Losses: targeted anti-avoidance rule from 6 December 2006,”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gains-manual/cg15835>, 검색일자: 2021. 2. 2.

피를 방지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 존재함<sup>275)</sup>

- bed and breakfasting 거래는 자산을 매도하고 30일 이내에 다시 매입하는 거래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손실 또는 이익을 확정하거나 연간 면제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 나타남
- 영국은 bed and breakfasting 거래 자체를 본질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의도적인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6일부터 ‘TAAR’ 규정을 도입함
  - TAAR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본손실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자본손실은 허용 가능한 손실으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다른 자본이득에서 상계될 수 없음
    - TAAR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CGTG(Capital Gains Technical Group)와 상의해야 함
  -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당한 처분(재취득)으로 인정됨<sup>276)</sup>
    - 거래당사자들이 모두 매각과 재매입 거래의 가격 변동에 노출됨
    - 정상가격 또는 시장가격에 따라 거래됨(arm’s length or market value)

## 바. 증권거래세

- 영국은 주식 매입 시 매수자에게 0.5%의 인지세(Stamp Duty Reserve Tax, SDRT)<sup>277)</sup>를 부과하며, 그 외의 증권거래세는 현재 존재하지 않음<sup>278)</sup>

275) PwC, “United Kingdom: Individual - Other taxes,” <https://taxsummaries.pwc.com/united-kingdom/individual/other-taxes>, 검색일자: 2020. 12. 15.

276) HMRC, “Bed and breakfasting: conditions to be satisfied,” <https://www.gov.uk/hmrc-international-manuals/capital-gains-manual/cg13360>, 검색일자: 2021. 2. 2.

277) HMRC, “Tax when you sell shares,” <https://www.gov.uk/tax-sell-shares/work-out-your-gain>, 검색일자: 2021. 2. 1.

278) 이상엽·오종문·기은선(2016), p. 35

## 4. 독일

### 가. 개요

#### 1) 과세방법

- 독일은 자본소득(Einkünfte aus Kapitalvermögen)<sup>279)</sup>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분리과세하며, 개인의 소득세율이 자본소득세율보다 낮은 경우 등에는 종합 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분리과세는 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완납적 원천징수(Abgeltungssueuer, Final withholding tax)를 통해 과세됨<sup>280)</sup>
- 독일은 주식에 대하여 2008년까지 단기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여 오다가 2009년 독일식 ‘이원적 소득세제(dualsteuer)’인 Abgeltungssteuer를 도입한 이 후부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자본이득에 대하여 모두 과세함<sup>281)</sup>
  - 2008년까지는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만 과세함<sup>282)</sup>
    - 1년 미만 보유 주식에 대하여도 특례규정(‘half-income system’)이 적용되어 양도차익의 50%만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음<sup>283)</sup>
  - 포트폴리오 주식(portfolio shares), 뮤추얼펀드(mutual fund), 채무상품 및 파

279) 영어로 Income from capital assets이며, 자본소득 또는 자산소득, 자본자산소득 등으로 표현되나, 본 보고서에서는 자본소득으로 통일하여 표기함

280) 자본소득에 대해 완납적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소멸하도록 되어 있지만, 납세자가 원하면 종합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납세자는 자본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하여 신고할 때 실효세율이 25%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 종합신고를 할 수 있음. 납세자가 그렇게 판단하고 종합신고를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25%를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직권으로 25%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음(오윤, 2012, p. 186)

281) 오윤(2012), pp. 185~186

282) Wolfgang Kessler and Rolf Eicke(2007), pp. 837~841

283) 박명호·기은선·정희선(2008), p. 129

생상품도 장단기 구분 없이 이원적 소득세제에 따른 원천징수를 적용받음

- 다만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이나 뮤추얼펀드의 경우에는 이원적 소득세 제 도입 이후에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grandfathering rule)<sup>284)</sup>

## 2) 과세대상

- 독일은 「소득세법」(EStG) 제20조에서 자본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 형태의 소득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인 의미일 뿐, 열거되지 않은 소득 또한 자본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sup>285)</sup>
  - 자본소득은 자본재산의 투입에 의해 보장되는 모든 대가 또는 혜택을 의미함
  - 다만 자본소득의 성격을 가진 소득이 다른 유형의 소득(농림업소득, 사업(영업)소득, 자유직업소득, 임대소득 등)으로 과세되면 자본소득으로는 과세되지 않음<sup>286)</sup>
- 독일의 자본소득은 크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자산 등의 양도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음<sup>287)</sup>
  - 금융자산 등의 양도소득은 주식 및 채권, 증권의 양도차익을 포함하며, 파생거래(옵션, 선물 및 스왑) 및 공매도로 인한 이익을 포함함<sup>288)</sup>
- 개인이 보유한 금융자산 등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자본소득으로 과세되는 것

284) 오윤(2012), p.186; Wolfgang Kessler and Rolf Eicke(2007), pp. 837~841: The only good news is the grandfathering rule, which provides that taxpayers acquiring stocks or shares of mutual funds before January 1, 2009, will still receive the full exemption after the holding period has expired.

28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1권, 2019, p. 309

286) 독일 「소득세법」 제20조 제8항

287) IBFD, “Germany - Individual Taxa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de\\_s\\_1.7.&refresh=1611638394811#ita\\_de\\_s\\_1.5.](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de_s_1.7.&refresh=1611638394811#ita_de_s_1.5.), 검색일자: 2021. 1. 27; 김유찬·이유향(2009), p. 92

288) IBFD, “Germany - Individual Taxa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de\\_s\\_1.7.&refresh=1611638394811#ita\\_de\\_s\\_1.7.](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de_s_1.7.&refresh=1611638394811#ita_de_s_1.7.), 검색일자: 2021. 1. 26

이나, 개인이 기업의 '중대한 지분(substantial interest)'<sup>289)</sup>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주식의 양도로 인한 이익은 자본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함<sup>290)</sup>

○ 중대한 지분(substantial interest)이란, 최근 5년 간 직·간접적으로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 예를 들어 A(개인)가 B(회사) 주식을 0.9%, C(회사) 주식을 0.5% 보유하고 있으며, B가 C의 주식을 30% 보유하고 있는 경우, A는 B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1.05\% (= 0.9\% + 0.5\% \times 30\%)$ 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중대한 지분을 보유한 자에 해당함<sup>291)</sup>

## 나. 과세소득 산정

### 1) 과세대상 자본이득

가) 일반적인 경우

□ 자본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금액('과세대상 자본이득')은 금융상품 등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Profit, 양도차익<sup>292)</sup>)에서 저축자 일괄공제(Sparer Pauschbetrag)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실제 필요경비(Werbungskosten)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1인당 801유로(부부 합산과세의 경우 1,602유로) 일괄 공제함<sup>293)</sup>(이하 '면제금

289) 박명호·기은선·정희선(2008), p.131; 이신희(2014), p. 65

290) IBFD, "Germany - Individual Taxa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de\\_s\\_1.7.&refresh=1611638394811#ita\\_de\\_s\\_1.7.](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de_s_1.7.&refresh=1611638394811#ita_de_s_1.7.), 검색일자: 2021. 1. 26

291) bibukurse.de, "VERÄUSSERUNG VON ANTEILEN AN KAPITALGESELLSCHAFTEN (§ 17 ESTG)," <https://www.bibukurse.de/einkommensteuer/einkuenfte/einkuenfte-aus-gewerbebetrieb/arten-gewerblicher-einkuenfte/einmalige-einkuenfte/veraeusserung-von-anteilen-an-kapitalgesellschaften-17-estg.html>, 검색일자: 2021. 1. 31.

292) 양도로 인한 자본소득은 'Gewinn aus Kapitalanlagen'이며, Gewinn은 profit의 개념으로 비용을 초과하는 이익을 의미하므로, '양도차익'으로 표현함

293) 독일 「소득세법」 제20조 제9항(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p. 330)

액'이라 함)

- 모든 자본소득에 대하여 금융비용, 계좌(depot) 관리비용, 컨설팅비용 등의 실제 비용은 공제할 수 없음<sup>294)</sup>

- 다만 2012년 12월 17일 Baden-Württemberg 금융법원의 판결(Az. 9 K 1637/10)<sup>295)</sup>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본자산의 소득에서 실제 소득 관련 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sup>296)</sup>

- 예를 들어 개인 소득세율이 25%보다 낮은 경우 종합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 관련 비용 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자본이득 전체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며, 다만 「투자세법」에 따라 부분 면제(Teilfreistellung, Partial exemption) 대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자본이득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과세 면제를 허용함<sup>297)</sup>

- 「투자세법」에 따른 부분 면제 대상은 뮤추얼펀드(mutual fund)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의미함<sup>298)</sup>

- 개인이 보유한 주식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중대한 지분(substantial interest)'<sup>299)</sup>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business income)으로 보아 과세대상 자본이득 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됨<sup>300)</sup>

-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과세대상 자본이득의 60%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나머지

294) Wolfgang Kessler and Rolf Eicke(2007), pp. 837~841: Regarding all dividend, interest, and capital gains income, actual costs such as finance, depot management, and consulting costs cannot be offset.

295) Justizportal Baden-Württemberg(독일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 법학데이터베이스), [https://lrbw.juris.de/cgi-bin/laender\\_rechtsprechung/list.py?Gericht=bw&Art=en](https://lrbw.juris.de/cgi-bin/laender_rechtsprechung/list.py?Gericht=bw&Art=en), 검색일자: 2021. 1. 28.

296) Finanztip, "So funktioniert die Abgeltungssteuer," <https://www.finanztip.de/abgeltungssteuer/>, 검색일자: 2021. 1. 28.

297) 독일 「소득세법」 제43a조 제2항

298) 독일 「투자세법」 제16조 제1항

299) 중대한 지분(substantial interest)이란, 최근 5년 간 직·간접적으로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300) 독일 「소득세법」 제3조 제40항; 동법 제17조 제1항

40%는 세금이 면제됨(Teileinkünfteverfahren: partial income procedure)

- 기업의 증대한 지분을 보유한 자가 보유한 전체 주식을 매각하거나 또는 해당 기업이 청산하는 경우, 자본이익이 3만 6,100유로(‘과세소득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9,060유로까지(‘공제금액’) 공제 가능함<sup>301)302)</sup>
  - 다만 이익이 3만 6,1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금액은 점진적으로 감소함<sup>303)</sup>
  - 만약 기업 주식 일부만 매각하는 경우 과세소득 기준금액 및 공제금액은 이에 비례하여 감소함
  - 예를 들어 A(개인)가 B회사 주식의 20%를 개인 투자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한 주식 전체를 매각하여 8천유로의 자본이익을 얻은 경우의 과세대상 자본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sup>304)</sup>
    - 과세대상 기준금액=36,100×20%(지분율)=7,220유로
    -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8,000-7,220=780유로(감소되는 공제금액)
    - 공제 금액=(9,060×20%(지분율))-780=1,032유로
    - 과세대상 자본이익=8,000-1,032=6,968유로
- 주식양도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므로 먼저 매입한 유가증권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함<sup>305)</sup>
  - 예를 들어 소액주주(1% 미만 보유)가 A주식을 2008년 이전에 100주, 2013년에 100주를 매입하고 2020년에 150주를 매각하는 경우, 100주는 과세되지 않

301) IBFD, “Germany - Individual Taxa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de\\_s\\_1.7.&refresh=1611638394811#ita\\_de\\_s\\_1.7.](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de_s_1.7.&refresh=1611638394811#ita_de_s_1.7.), 검색일자: 2021. 1. 26.

302) 독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

303) 이상엽·오종문·기은선(2016), p. 33 <표 III-13> 참고

304) bibukurse, “VERÄUSSERUNG VON ANTEILEN AN KAPITALGESELLSCHAFTEN (§ 17 EStG),” <https://www.bibukurse.de/einkommensteuer/einkuenfte/einkuenfte-aus-gewerbebetrieb/arten-gewerblicher-einkuenfte/einmalige-einkuenfte/veraeusserung-von-anteile-n-an-kapitalgesellschaften-17-estg.html>, 검색일자: 2021. 1. 31.

305) Finanztip, “So funktioniert die Abgeltungssteuer,” <https://www.finanztip.de/abgeltungssteuer/>, 검색일자: 2021. 1. 28.

으며 50주에 대해서는 25% 세율로 원천징수함

나) 상호투자펀드(Mutual Fund) 과세<sup>306)</sup>

- 독일은 201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투자세법」(InvStRefG)을 도입하였으며, 상호투자펀드(mutual fund, 이하 ‘뮤추얼펀드’)를 보유한 거의 모든 투자자는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음<sup>307)</sup>
  - 이로 인해 뮤추얼펀드에서 발생하는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이 적용됨<sup>308)</sup>
  - 「새로운 투자세법」(InvStRefG)에 따르면 뮤추얼펀드 단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감안하여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자본소득에 대하여 부분 면제비율을 공제한 금액만을 과세대상소득으로 봄<sup>309)310)</sup>
    - 「새로운 투자세법(InvStRefG)」 도입 이전에는 뮤추얼펀드 단위에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았음
  - 부분 면제 비율은 투자자 유형<sup>311)</sup> 및 뮤추얼펀드 유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며,<sup>312)</sup>

---

306) 상호투자펀드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주석이 없는 한 Deubner Verlag GmbH & Co. KG(2018)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307) 「투자세법」 개혁 이전까지 투자 펀드 투자자들은 펀드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같이 취급하였으나, 「새로운 투자세법」(InvStG)의 시행에 따라 동법 제6조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는 펀드 단위에서 법인세 및 무역세가 과세되며, 투자자는 ‘사전일시금’에 대해서 과세의무를 부담함(Deubner Verlag GmbH & Co. KG(2018), p. 2)

308) KPMG, “Germany - Income Tax,”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11/12/germany-income-tax.html>, 검색일자: 2021. 1. 26.

309) Deubner Verlag GmbH & Co. KG(2018), p.2: Zum Ausgleich für die Vorbelastung auf Fondsebene wird dem Anleger eine prozentuale Teilfreistellungsquote gewährt.

310) DEUBNER STEUERN & PRAXIS, “Besteuerung Anleger von Investmentfonds,” <https://www.deubner-steuern.de/themen/investmentsteuerreform-2018/besteuerung-anleger-von-investmentfonds.html>, 검색일자: 2021. 1. 28.

311) 투자자유형은 개인자산(개인투자자), 사업자산(사업투자자), 법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개인의 자본(금융자산)투자 소득세를 다루고 있으므로 법인투자자는 고려하지 않음

312) KPMG(2018), pp. 14~15 참고, [https://assets.kpmg/content/dam/kpmg/de/pdf/Themen/2018/InvStG\\_2018\\_englisch.pdf](https://assets.kpmg/content/dam/kpmg/de/pdf/Themen/2018/InvStG_2018_englisch.pdf), 검색일자: 2021. 1. 28.

개인투자자의 면제 비율은 다음과 같음

- 주식펀드(주식 비율이 51%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의 30%를 과세 면제함
  - 혼합펀드(주식 비율이 최소 25% 이상 51% 미만)는 소득의 15%를 과세 면제함
  - 개방형 국내 부동산 펀드(부동산 비율이 최소 51% 이상)는 소득의 60%, 해외 부동산 펀드는 소득의 80%까지 과세 면제함
  - 그 외의 기타 펀드에 대해서는 부분 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과세함
    - 기타 펀드에는 채권펀드, 머니마켓 펀드, 주식이 25% 미만인 혼합펀드, 대체 투자펀드, 파생펀드, ETF 등이 있음
- 투자자의 면제되지 않은 소득은 자본이득에 적용되는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sup>313)</sup>
- 원천징수의무자(은행 등)는 투자자의 당좌계좌 또는 다른 예금계좌에서 원천징수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sup>314)</sup>
    - 1인당 면제금액(801유로, 부부의 경우 1,602유로)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출이 이루어짐
    - 만약 투자자의 계좌에 충분한 자금이 없는 경우, 투자자가 사전에 반대하지 않는 한 은행은 세금에 대한 초과 인출 기능(Dispositionscredit)<sup>315)</sup>을 사용할 수 있음
- 뮤추얼펀드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주식양도소득과 다르게 2009년 이전<sup>316)</sup>에 취득한 경우라도 개정된 투자세법이 적용되는 2018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자본

313) Finanztip, "So funktioniert die Abgeltungssteuer," <https://www.finanztip.de/abgeltungssteuer/>, 검색일자: 2021. 1. 28.

314) BVI, "FAQ Vorabpauschale," <https://www.bvi.de/en/faq/faq-vorabpauschale/>, 검색일자: 2021. 1. 28.

315) 일반적으로 대출 신청 없이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부여되는 한도까지 단기적인 자금 대출의 형태로, 단기 현금인출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음.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약관을 통하여 고객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미납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은행의 다른 계좌에 접근할 수 있음(자료: Finanztip, "Dispokredit: Das kosten Dispo und Kontouberziehung," <https://www.finanztip.de/girokonto/dispokredit/>, 검색일자: 2021. 1. 29.)

316) 독일이 이원적 과세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음

이득 과세대상임<sup>317)318)</sup>

- 제도의 경과 규정으로서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펀드주식에 대해서 개인투자자에게 10만유로의 면제한도를 부여함
- 즉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가치 상승분의 누적금액이 10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임<sup>319)</sup>

## 2) 자본손실의 처리

### 가) 손익통산

- 자본손실은 다른 유형의 일반소득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될 수 없으며 자본소득 내에서만 손익통산이 허용됨<sup>320)321)</sup>
  - 다만 주식양도차손은 주식양도차익과의 상계만 가능함
  - 주식이 아닌 다른 금융자산 등으로부터 발생한 자본손실의 경우 자본소득 내에서, 즉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도 상계가 가능함<sup>322)</sup>
    - 예를 들어 증권의 양도차손은 이자·배당소득과 상계가 가능하지만, 주식양도차손은 주식양도차익 내에서만 상계 가능함

317) Finanztip, "So funktioniert die Steuer auf Aktienfonds und ETFs seit 2018," <https://www.finanztip.de/indexfonds-etf/investmentsteuerreformgesetz/>, 검색일자: 2021. 1. 27.

318) 기득권(Bestandsschutz; Grandfathering)이 적용되지 않음. 기득권은 새로운 법률의 도입 또는 변경이 있을 때, 변경된 법적상황 이전에 이미 효과적인 법적행위를 수행한 경우에는 변경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함(우리나라의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유사한 의미로 해석됨)(자료: wikipedia, "Bestandsschutz," <https://de.wikipedia.org/wiki/Bestandsschutz>, 검색일자: 2021. 1. 28.)

319) DEUBNER STEUERN & PRAXIS, "Investmentsteuerreform 2018," <https://www.deubner-stuern.de/themen/investmentsteuerreform-2018/#collapse48926>, 검색일자: 2021. 1. 28.

320) 독일 「소득세법」 제20조 제6항

321) IBFD, "Germany - Individual Taxa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de\\_s\\_1.&refresh=1611656459442#ita\\_de\\_s\\_1.9.2.](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de_s_1.&refresh=1611656459442#ita_de_s_1.9.2.), 검색일자: 2021. 1. 26.

322) 오윤(2012), pp. 187~188

- 다만 2009년 이원적 과세체계 도입에 따라 주식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경과 규정이 존재함<sup>323)</sup>
  -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개인의 자본손실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식에서 발생한 자본 소득과 상계할 수 있으며, 2014년부터는 주식을 제외한 자본 소득 내에서 상계 가능함<sup>324)</sup>
    - 즉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주식의 양도손익과 그 외 자본손익의 통산이 가능하였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식의 양도손익은 다른 자본손익과 통산할 수 없음
- 납세자가 자본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유형에서 발생한 손실과 자본이득을 상계할 수 있음<sup>325)</sup>
- 기업의 중대한 지분을 보유한 자의 주식양도 처분손익은 자본소득이 아니라 사업 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다른 소득과 손익통산이 가능함<sup>326)</sup>

#### 나) 이월공제·소급공제 가능 여부 및 기간

- 자본손실은 별도의 기한 없이 이월공제가 가능하며,<sup>327)</sup> 직전 1년까지 소급공제를 허용함<sup>328)</sup>
  - 소급공제(carry-back)는 51만 1,500유로를 한도로 가능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2만 3천유로까지 가능함<sup>329)</sup>

323) 오윤(2012), p. 188

324) IBFD, "Germany - Individual Taxa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de\\_s\\_1.&refresh=1611656459442#ita\\_de\\_s\\_1.9.2.](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de_s_1.&refresh=1611656459442#ita_de_s_1.9.2.), 검색일자: 2021. 1. 26.

325) IBFD, "Germany - Individual Taxa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de\\_s\\_1.&refresh=1611656459442#ita\\_de\\_s\\_1.9.2.](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de_s_1.&refresh=1611656459442#ita_de_s_1.9.2.), 검색일자: 2021. 1. 26.

326) 이상엽·오종문·기은선(2016), p. 23

327) 독일 「소득세법」 제20조 제6항

328) 이상엽·오종문·기은선(2016), p. 20 <표 III-6> 참고

329) 독일 「소득세법」 제10d조 제2항 1~2; 박명호·기은선·정희선(2008), pp. 133~134

- 납세자는 소급공제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결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기 이월(carry-forward)할 수 있음<sup>330)</sup>
  - 2004년부터 손실 이월공제의 한도가 존재하며, 한 과세기간에 최대 100만유로(배우자가 있는 경우 200만유로)를 한도로 이월 가능함<sup>331)</sup>
  - 다만 손실액이 100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손실금액의 60%까지만 이월 가능함<sup>332)</sup>

#### 다. 세율

- 독일은 2009년부터 개인자본이득에 대하여 25%로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sup>333)</sup>
  - 원천징수세에 대하여 연대세(solidarity surcharge, 원천징수세의 5.5%)<sup>334)</sup>와 교회세(church tax,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지역에 따라 최종 원천징수세의 8%<sup>335)</sup> 또는 9%)가 추가됨<sup>336)</sup>
    - 연대세는 자본소득의 1.375%, 교회세는 자본소득의 2% 또는 2.25%임
- 중대한 지분을 보유한 경우, 주식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율(0~45%)이 적용됨
  - 사업소득 과세 시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표 III-11>과 같음

33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2권, 2020, pp. 413~414

331) 이신희(2014), p. 69

332) 이상엽, 「자본이득 과세 현황 및 과세 방향」, 『한국증권학회 증권사랑방 제2차 자료집』, 2017, p. 27

333) 오윤(2012), p. 186

334) 연대세, 연대부가세, 사회세 등으로 표현되며, 본 보고서에서는 연대세로 통일하여 기재함

335) 바이에른과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에서는 8%의 교회세가 적용됨(자료: Deloitte,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us/Documents/Tax/us-tax-ice-country-highlights-germany.pdf>, 검색일자: 2021. 1. 26.)

336) EY, "Worldwide Personal Tax and Immigration Guide 2020-21," [https://www.ey.com/en\\_gl/tax-guides/worldwide-personal-tax-and-immigration-guide-2019-20](https://www.ey.com/en_gl/tax-guides/worldwide-personal-tax-and-immigration-guide-2019-20), 검색일자: 2021. 1. 26.

〈표 III-11〉 독일의 종합소득세율

(단위: 유로, %)

소득구간		세율
1구간(기본공제, Grundfreibetrag)	9,408 이하	0
2구간	9,409 ~ 14,532	14 ~ 23.97
3구간	14,533 ~ 57,051	23.97 ~ 42
4구간	57,052~270,500	42
5구간(부유세, Reichensteuer)	270,501 이상	45

주: 1. 부부합산과세의 경우 기본공제는 9,408유로의 2배를 적용함 1만 8,816유로를 적용함  
 자료: IBFD, "Germany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October 2020)," 검색일자: 2021. 1. 26.

## 라. 신고방법 및 납세절차

### 1) 원천징수

-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25% 세율로 원천징수함(Final flat withholding tax)으로써 과세가 종결되므로 추가적인 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음<sup>337)</sup>
- 소득에서 저축자 일괄공제 금액까지 과세 면제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면제명령(Freistellungsauftrag, Exemption order)'을 신청해야 함<sup>338)</sup>
  - 면제명령은 각 신용기관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각 기관별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면제금액의 비율을 지정 가능함
  - 여러 신용기관에 중복으로 신청하더라도 총면제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는 없음
  - 면제명령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발생한 자본소득이 총면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은행은 자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함

337) 독일 「소득세법」 제32d조(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p. 331)

338) steuertipps, "Freistellungsauftrag," <https://www.steuertipps.de/lexikon/f/freistellungsauftrag>, 검색일자: 2021. 1. 28.

## 2) 종합소득신고

- 완납적 원천징수 제도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평가(Special Assessment)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 소득세에 포함하여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함<sup>339)340)</sup>
  - 개인의 평균 소득세율이 원천징수세율(25%)보다 낮은 경우, 낮은 세율로 적용할 것을 신청 가능함
  - 면제금액이 전부 사용되지 않은 경우
  - 외국납부 원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즉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자본소득(예: 외국인 투자소득)이 있는 경우<sup>341)</sup>)
  
- 개인의 소득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이며,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는 7월 31일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함<sup>342)</sup>
  - 다만 전문 세무사 등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연장 신청을 자동으로 승인해 주며, 9월 30일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함
    -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는 과세기간의 다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연장 가능해짐(예: 2019 과세연도의 경우, 2021년 2월 28일까지 연장 가능함)

339) WWKN, "Capital gains tax (Kapitalertragsteuer)" <https://wwkn.de/en/about-german-taxes/capital-gains-tax-kapitalertragsteuer/>, 검색일자: 2021. 1. 26.

340) 과거에는 교회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교회세를 납부해야 하였으나, 2015년 1월부터 금융기관이 연방중앙세무서(BZSt)로부터 납세자의 종교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원천징수 시 자동으로 납부하는 시스템이 도입됨(자료: Finanztip, <https://www.finanztip.de/abgeltungsteuer/>, 검색일자: 2021. 1. 28.)

341) KPMG, "Germany - Income Tax,"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11/12/germany-income-tax.html>, 검색일자: 2021. 1. 26.

342) IBFD, "Germany - Individual Taxa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de\\_s\\_1.7.&refresh=1611638394811#ita\\_de\\_s\\_1.1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de_s_1.7.&refresh=1611638394811#ita_de_s_1.11.), 검색일자: 2021. 1. 26.

## 마. 특례규정

- 과세특례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바. 증권거래세

- 현재 독일에는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FTT)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음<sup>343)</sup>
  - 다만 EU 10개국은 2021년까지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며, 과세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음<sup>344)</sup>
    - 2019년 12월, 독일 재무장관 올라프 솔츠(Olaf Scholz)는 기업가치가 10억 유로를 넘는 내국 기업<sup>345)</sup>의 경우 주식 매입거래 가치에 대해 0.2%의 비율로 금융거래세 도입을 제안한 바 있음<sup>346)</sup>
    - 현재 안에 따르면 거래세는 주식에만 부과되며 파생상품과 채무상품은 제외됨

343) 1991년 이전에는 고정수입증권에 1.5%, 주식에 2.5%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었으나(자료: Brokervergleich, "Die Finanztransaktionssteuer-Einführung für 2021 geplant," <https://www.brokervergleich.de/wissen/expertisen/finanztransaktionssteuer/>, 검색일자: 2021. 1. 29.), 1991년 1월 「자본시장기초개선법」에 의해 폐지됨(이상엽·오종문·기은선, 2016, p. 35 <표 III-15> 참고)

344) Brokervergleich, "The financial transaction tax - introduction planned for 2021," <https://www.brokervergleich.de/wissen/expertisen/finanztransaktionssteuer/>, 검색일자: 2021. 1. 29.

345) 2019년 12월 기준으로 기업가치 10억유로가 넘는 기업은 독일 내에 145개가 있으며, EU 회원국 전체에 걸쳐 500개 이상이 존재함(자료: Tax Foundation, "Germany's Plans for a Financial Transaction Tax," <https://taxfoundation.org/germany-financial-transaction-tax/>, 검색일자: 2021. 1. 29.)

346) Tax Foundation, "Germany's Plans for a Financial Transaction Tax" <https://taxfoundation.org/germany-financial-transaction-tax/>, 검색일자: 2021. 1. 29.

## IV. 국제비교 및 쟁점

### 1. 국제비교

#### 가. 금융자산 자본이득 과세체계

- 자본이득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우리나라, 미국, 영국의 경우 금융자산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하는 반면, 일본과 독일은 양도차익뿐만 아니라 이자 및 배당소득도 포함하고 있어 이원적 소득체계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상품 자본이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어 이원적 소득체계에 가깝지만 이자 및 배당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음
  - 영국은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모든 자본자산에 대하여 자본이득세로서 분류과세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모든 자본자산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합산하여 과세함
- 자본이득의 과세는 분류과세 또는 종합과세 방식으로 이루어짐
  - 일본과 영국은 금융투자소득 또는 자본이득으로 분류과세하고 미국과 독일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모두 적용함
    - 미국의 경우 장기자본이득은 분리과세, 단기자본이득은 종합과세함
    - 독일은 분리과세가 원칙이나 납세자가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미국의 장기보유에 적용되는 분리과세 역시 종합과세가 유리한 납세자는 종합과세 세율로 과세함

-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부터 금융자산의 자본이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여 분류 과세할 예정이며 일본의 과세방식과 유사함
- 세율은 일본과 독일(분리과세)은 단일세율이고 한국과 영국은 과세소득에 따라 2단계 세율, 미국(장기자본이득)은 3단계 세율을 적용함
  - 미국의 경우 단기자본이득은 종합과세하므로 일반소득세율을 적용하고 독일은 납세자 선택에 의해 소득세율 적용 가능함
- 납부방법의 경우, 영국과 미국은 신고납부방식이고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함
  - 일본의 경우, 신고납부가 원칙이지만 특정계좌 이용 시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고 신고의무도 면제됨
    - 일본은 투자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정계좌를 이용하고 원천징수를 선택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함
  - 독일도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됨
  - 우리나라는 예납적 원천징수로서 원천징수한 후 확정신고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됨
    -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도 필요함

〈표 IV-1〉 주요국의 금융자산 자본이득 과세체계

구분	한국 <sup>1)</sup>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자본 소득 범위	• 주식, 채권, 파생 상품 등의 양도 차익	• 주식, 채권, 파생상 품 등의 양도 차익	• 주식, 채권, 등의 양도차익 • 이자·배당	• 주식, 채권, 파생 상품 등의 양도차 익	• 주식, 채권, 파생 상품 등의 양도 차익 • 이자, 배당
과세 방식	• 분류과세: 금융 투자소득	• 종합과세: 1년 미만 보유 • 분리과세: 1년 초과 보유	• 분류과세: 양도 소득(파생상품 은 잡소득)	• 분류과세: 자본 이득	• 원칙: 분리과세 • 선택 <sup>2)</sup> : 종합과세
세율	• 2단계 세율 <sup>3)</sup> 3억 이하: 20% 3억 초과: 25%	• 단기이익: 종합 소득세율(10~37%) • 장기이익: 분리 과세(0%, 15%, 20%) • 순투자소득세: 3.8% <sup>4)</sup>	• 단일세율 <sup>5)</sup> 20.315%	• 2단계 세율 <sup>6)</sup> 3만 7,500파운 드 이하: 10% 3만 7,500파운 드 초과: 20%	• 분리과세: 25% <sup>7)</sup> • 종합과세: 소득세율 (14~45%)
납부 방법	• 원천징수 • 예정신고 <sup>8)</sup> 및 환 정신고 필요	• 신고납부	• 신고납부원칙 • 특정계좌 이용 시 원천징수 • 원천징수 시 신 고의무 면제 <sup>9)</sup>	• 신고납부	• 원천징수 • 신고의무 없음

주: 1) 우리나라는 개정된 금융투자소득세를 기초로 함

2) 면제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자본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  
의 소득세율이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경우 종합과세 선택 가능

3)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 27.5%임

4) 순투자소득이 있고 조정총소득이 법정기준액(부부합산 기준 25만달러)을 초과하는 자에 대  
하여 순투자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함

5) 소득세 15%, 주민세 5%, 부흥특별소득세 0.315%로 구성됨

6) 영국의 소득세율은 기본세율(10%), 고세율(40%), 추가세율(45%)의 세 구간으로 구분하며,  
자본이득세율은 기본세율구간의 경우 10%, 고세율 및 추가세율구간의 경우 20% 적용함

7) 연대세(5.5%)와 교회세(8% 또는 9%)가 추가됨

8) 예정신고는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받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받았  
으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으로서 양도로 보  
는 소득이 있는 경우임

9) 특정계좌를 간이신고계좌 선택 시 또는 일반계좌 이용 시 신고의무 있음

자료: 본문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나. 기본공제 및 비과세·감면

-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소득세제는 금융자산을 국내 상장주식등과 기타 금융자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5천만원,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함
  - 금융투자소득세 제도의 추진 단계에서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2천만원 공제,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에 대해 250만원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이후 상장주식에 대한 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sup>347)</sup>
  - 미국, 영국, 독일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금융자산 유형별로 공제금액에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음
    - 비과세 금액은 미국의 경우 4만달러(독신), 영국 1만 2,300파운드(개인), 독일 801유로(독신)임
    - 다만 미국과 영국의 경우 금융자산뿐 아니라 모든 자본자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기본공제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일본은 기본공제 및 면세소득을 적용하지 않음
    - 일본이 기본공제 없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가 시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음
    - 일본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를 점진적으로 비과세를 줄이는 과정을 거쳐 시행하였는데, 1961년 당시 전반적인 비과세에서 연 50회 이상 20만주 이상 연속거래만 과세대상에 포함하였다가 연 30회 12만주로 조정하였고, 1987년에는 12만주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수차례에 걸친 과세범위 확대를 거쳐 1989년에 모든 주식 양도차익을 과세하게 되었음<sup>348)</sup>
    - 즉 일본은 제도의 정착을 위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과세범위를 서서히 확대하였기 때문에 기본공제 없이 제도가 정착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면 과세로 전환하면서 제도의 정착률을 위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347) 기획재정부, 「(문답자료) 2020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2020. 7. 22., pp. 11~12., [https://www.mo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4156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028](https://www.mo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4156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028), 검색일자: 2021. 1. 20.

348) 홍범교·김진수(2010), pp. 110~111.

- 조사대상국 중 미국, 영국, 독일에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등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비과세 및 과세이연 제도가 있음
  - 미국의 경우 5년 이상 보유한 적격소기업주식의 양도차익 50%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와 6개월 이상 보유한 적격소기업주식을 양도 후 대체취득하는 경우 과세를 이연하는 제도가 있음
  - 영국은 적격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자 및 투자자에게 자본이득에 대한 유효세율이 10%가 되도록 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와 3년 보유한 적격비상장기업 주식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있음
  - 독일의 경우 뮤추얼펀드의 소득 일부를 과세 면제하는 제도가 있음

〈표 IV-2〉 자본이득 기본공제 및 비과세·감면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기본공제 또는 면세소득	① 국내상장주식 등: 5천만원 ② 기타금융자산: 250만원	장기자본이득: 기준금액 (독신 4만, 부부합산 8만, 세대주 5만 3,600) 이하 0% 세율 적용	없음	① 개인: 1만 2,300파운드 ② 신탁: 6,150 파운드	독신: 801유로 부부합산: 1,602유로
소득공제 및 과세이연	현행 「소득세법」 및 「조특법」상 확인되지 않음	① 소득공제: 5년 이상 보유한 적격소기업주식의 양도차익 50%를 소득에서 공제 ② 과세이연: 6개월 이상 보유한 적격소기업주식 <sup>1)</sup>	없음	① 적격주식양도 사업자 <sup>2)</sup> ·투자자 <sup>3)</sup> 에게 자본이득공제 <sup>4)</sup>	뮤추얼펀드에 한해 부분과세면제 적용 ① 주식펀드 <sup>5)</sup> : 30% 면제 ② 혼합펀드 <sup>5)</sup> : 15% 면제

주: 1) 양도 후 대체취득한 경우 적용 가능하며, 대체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이연된 이익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과세이연함  
 2) 사업자 공제 요건: ① 개인회사 ② 양도자가 해당 기업의 직원 또는 임원 ③ 해당 기업이 상업회사 또는 사업회사의 지주회사  
 3) 투자자 공제 요건: ① 2016. 3. 17. 이후 정상가격으로 발행된 주식으로 발행시점에 전액 현금 납입한 경우 ② 비상장 상업회사주식 ③ 투자자(이해관계자 포함)가 해당 기업이 직원이 아님  
 4) 관련 자본이득세 유효세율이 10% 되도록 자본소득 조정(공제), 평생공제한도 있음(사업자 공제 100만파운드, 투자자공제 1천만파운드)  
 5) 주식펀드는 주식 비율이 51% 이상, 혼합펀드는 주식비율이 25% 이상 51% 미만임  
 자료: 본문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다. 손익통산 범위 및 이월공제

- 통산 가능한 소득의 범위 및 통산방법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는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 간에 손익 통산이 가능함
  - 미국과 영국은 금융자산뿐 아니라 모든 자본소득 간 손익통산이 가능함
    - 미국의 경우 자본손실 3천달러까지 일반소득과도 통산 가능함
  - 일본과 독일은 금융자산 자본소득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소득을 포함한 모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통산 가능하므로 손익통산 범위가 포괄적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일본은 금융자산을 상장주식, 일반주식,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각 자산 유형 내에서만 손익통산이 가능하고 서로 다른 자산 유형 간에는 손익통산할 수 없음
    - 독일은 주식의 경우에는 자본손익만 통산 가능하고 주식 외의 금융자산은 자본손익, 이자 및 배당소득과 통산 가능함
  
- 자본손실의 이월공제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각각 5년과 3년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미국과 독일, 영국의 경우 기간에 제한 없이 이월공제가 가능함
  - 독일은 이월공제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자본손실액이 100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의 60%만 이월 가능함
    - 또한 직전 1년에 한하여 소급공제를 선택할 수 있고 소급공제 한도는 51만 1,500유로(독신 기준)임
  - 영국은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소급공제를 허용함

〈표 IV-3〉 자본손익의 통산범위 및 이월공제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손익 통산 범위	① 금융자산 간 자본이득 손익통산	① 금융자산 및 다른 자산의 자본이득과 모두 손익통산 ② 순자본손실 3천 달러까지 일반소득과 통산 가능	① 상장주식·채권·펀드 간 양도소득·이자·배당 손익통산 ② 일반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자·배당 손익통산 ③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은 잡소득으로 손익통산	① 금융자산 및 다른 자산의 자본이득과 모두 손익통산	① 주식: 타소득과 손익통산 불가 ② 주식 외 금융자산: 증권양도차익 및 배당·이자와 손익통산 가능
손실 이월 공제	5년간 이월 공제	기간 제한 없이 이월 공제	3년간 이월공제	기간 제한 없이 이월 공제 납세자 사망 시 소급 공제	기간 제한 없이 이월 공제 <sup>1)</sup> 1년 소급공제 선택 가능(독신 기준 51만 1,500유로 한도)

주: 1) 이월 손실액이 1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60%만 이월 가능함  
 자료: 본문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라. 장기보유 및 특정계좌 과세우대

- 독일을 제외한 국가에서 다양한 장기보유 및 특정계좌 과세우대 제도를 시행 중임
  - 미국의 경우 1년 초과 보유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일반소득 세율보다 낮은 자본이득 세율을 적용함
  - 일본은 특정계좌에서 장기간 미인출 시 자본이득에 대해 비과세함
    - 즉 NISA 계좌를 통해 상장주식, 공모주식, 투자신탁 등에 투자한 자본이득에 대해 일정 기간 미인출 시 한도금액 내에서 비과세함
    - 비과세 한도는 일반계좌의 경우 5년간 연 120만엔, 적립계좌는 20년간 연 40만엔, 주니어계좌는 5년간 연 80만엔임
  - 영국은 특정기업에 장기 투자한 주식에 대하여 비과세하며, ISA 계좌를 통해 거

래하는 주식, 채권, 펀드 등의 수익에 대해 비과세함

- ISA 계좌의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비과세한도는 연간 2만파운드임

- 우리나라의 경우 ISA 계좌를 이용한 장기투자 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저율과세를 적용함

- 기존의 ISA제도를 개정하여 2021년도부터 주식 직접투자도 가능해졌음

-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순소득 200만원(서민형 가입자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비과세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9.9%의 저세율로 분리과세함

- 독일은 장기보유 및 특정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는 확인되지 않음

〈표 IV-4〉 장기보유 및 특정계좌 과세우대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내용	① ISA제도 •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총 1억원 • 혜택: 순소득 200만원, 400만원까지 비과세 • 기간: 3년	① 장기보유 저율 분리과세 • 1년 이상 보유 시 소득세율보다 낮은 자본이득세율 적용 <sup>1)</sup>	① NISA제도 • 납입한도(일반 NISA 연 120만엔, 적립 NISA 연 40만엔, 주니어 NISA 연 80만엔) 내에서 비과세 • 기간: 5년 또는 20년	① ISA제도 • 연간 납입한도 2만파운드 내에서 비과세 ② 특정기업 주식 투자 시 비과세 • 기업투자제도 <sup>2)</sup> • 초기기업투자제도 <sup>2)</sup> • 사회적기업투자제도 <sup>3)</sup>

주: 1) 순자본이득이 일반소득에 합산되어 종합과세되었을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자본이득세율보다 낮은 경우 종합과세 한계세율을 적용하므로 '최대자본이득세율'이라 하고, 단기자본이득에 비해 우대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이 있음

2) 요건: ① 일정 규모 이하의 비상장상업회사(적격기업) ② 신주 청약으로 현금 완납한 보통주식(적격주식) ③ 3년 이상 보유하고 회사 직원이 아니며 상당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투자자 요건)

3) 요건: ① 일정 규모 이하의 비상장 사회적 기업 ② 신주 청약으로 현금 완납한 보통주식 ③ 3년 이상 보유하고 회사 및 연결회사의 임직원, 파트너, 보수이사가 아닌 자

자료: 본문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마. 증권거래세

- 조사대상국 중 우리나라와 영국에서 주식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주식 양도 시 코스피 0.1%, 코스닥 0.25%, 코넥스 0.1%,

기타 0.45%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는 2023년부터는 세율이 코스피 0%, 코스닥 0.15%, 코넥스 0.1%, 기타 0.35%로 인하할 예정이다

-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거래세 부과하지 않음

- 영국은 인지세로 주식에 대해 매수 시 0.5%를 부과하고 그 외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음
- 독일은 EU 10개국 합의에 의해 기업가치 10억유로를 초과하는 내국기업 주식의 매입가액에 대해 0.2% 세율의 금융거래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의 거래세는 없지만 뉴욕주정부 차원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음

〈표 IV-5〉 주요국의 거래세 현황

구분	한국 <sup>1)</sup>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세목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sup>2)</sup>	없음	인지세	금융거래세 도입을 검토 중 <sup>3)</sup>
세율	주식 매도 시 코스피: 0% <sup>4)</sup> 코스닥: 0.15% 코넥스: 0.1% 기타: 0.35%	주식 매도 시 \$ 5 미만: ₩1.25 \$ 5~10: ₩2.5 10~20: ₩3.75 \$ 20 이상: ₩5	없음 (증권거래세 1999년 폐지)	주식 매수 시 0.5%	기업가치 10억 유로 초과하는 내국 기업 주식의 매입가액에 대해 0.2%

주: 1) 제시한 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2023년 이후 세율임(현재 세율은 코스피 0.1%, 코스닥 0.25%, 코넥스 0.1%, 기타 0.45%이고, 2021~2022년 기간에는 코스피 0.09%, 코스닥 0.23%, 코넥스 0.1%, 기타 0.43%로 단계적으로 인하 예정임)

2) 연방정부에서는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뉴욕주에서만 부과함

3) EU 10개국은 2021년까지 금융거래세 도입에 합의하였으나, 현재 기준으로 정해진 바는 없음

4) 농어촌특별세는 별도 부과되며 현행과 동일하게 양도가액의 0.15% 과세함(「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자료: 본문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 쟁점

### 가. 기본공제

- 금융투자소득세제에서도 여전히 금융투자상품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존재함
  - 국내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 5천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간접투자를 포함한 기타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함
    - 국내상장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은 국내상장주식과 공모국내주식형펀드이고 기타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해외주식, 해외펀드,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채권양도차익, 비상장주식, 부동산·채권·혼합형펀드, 사모펀드임
  - 또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2천만원 초과 시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므로 자본이득 외 금융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음
  
- 우리나라의 주식 자본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규모는 조사대상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임
  - 각 나라별로 면세소득을 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장기자본이득에 대해 3만 9,375달러(독신), 영국은 1만 2,300파운드, 독일은 801유로(독신)에 대해 과세 면제하고 있음<sup>349)</sup>
    - 일본은 기본공제 및 면세소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미국과 영국의 면세소득기준은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모든 자본자산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적용되는 금액임
  
-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기본공제금액을 설정한 것은 제도의 정착률을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타 금융상품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349) 원화로 환산하면 미국은 4,429만 6,875원, 영국은 189만 2,970원, 107만 7,713원임(2020년 2월 5일자 네이버 제공 환율 1,124.5USD, 1,537.98GBP, 1,345.46EUR를 적용함)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기본공제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향후 모든 금융상품을 합산한 금융자산 자본소득 전체에 대해서 공제금액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공제 규모의 차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간접투자를 기피하는 등의 경제적 왜곡을 축소시킬 수 있음
- 이자 및 배당 소득과의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는 이자·배당 소득에 적용되던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종합과세를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나. 장기보유 특례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별도의 장기보유 특례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종전의 ISA제도를 개정하여 ISA 계좌를 이용한 직접투자가 가능해졌고 ISA 계좌를 이용한 장기 투자 시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이 있음
  - 종전의 ISA 계좌는 가입자의 소득제한이 있었고 상장주식 거래가 불가능하였으나, 2021년부터 가입에 대한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상장주식도 편입할 수 있게 되었음
    - 계좌에 담을 수 있는 상품 유형은 예·적금, 펀드, ELS, 상장주식 등임
    - 의무가입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고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 총 1억원이며, 총납입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한도의 이월도 가능함
    - 주식과 ISA 계좌 내 다른 상품과 손익통산이 가능하고 합산손익(이자·배당 양도소득세)의 200만원(서민형 가입자 400만원)까지 비과세임
- 조사대상국 중 미국, 일본, 영국의 경우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이 있음
  - 미국의 경우, 개별 종목을 1년 초과 보유한 장기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율보다 낮은 0%, 15%,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함
  - 일본의 경우, NISA 계좌에서 5년간 미인출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짐
    - 일반 NISA 계좌 불입금 연 한도는 120만엔임

- 영국은 특정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 조세혜택이 있으며, ISA 계좌에서 발생한 자본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지만 일정 기간 유지할 의무는 없음
  - 독일과 일본과 같이 단일세율 체계에서는 장기보유에 대한 과세문제는 누진세율 체계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있음
- 정부는 주식 장기보유 시 세제지원을 검토할 것을 시사하고 있지만 장기보유특례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장기보유특례는 다음과 이유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장기투자자는 단기투자자에 비해 투자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2단계 누진세율을 체계는 장기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함
    - 주식 시장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사이클의 변화로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를 유도하여야 함
    - 노령인구의 빈곤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어 가는 상황이므로 개인 스스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투자를 지원해야 함
  - 장기보유특례를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음
    - 대부분의 장기투자자는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면효과가 대주주에 집중되는 역진적 지원효과가 나타나는 문제가 있음
    - 소액투자자 중 장기투자자는 그 비중이 적고 기본공제로 어느 정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세율체계가 누진구조이기는 하나 최고세율이 25%로 소득세율에 비해 낮고 누진율도 크지 않음
    - 장기투자 세제지원을 위해서는 양도차익 산출방식에 있어서 선입선출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행정적 어려움도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ISA 계좌 등 장기상품을 통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존 제도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장기투자를 유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다. 조세회피 방지규정

- 금융투자소득세제에서는 조세회피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포함하지 않음
  -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한해 과세하고 있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하여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였다가 다시 연초에 매수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조사대상국 중에는 미국과 영국에서 조세회피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은 주식등을 손실로 매도하고, 매도 전·후 30일 이내에 동일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손실공제를 금지함
  - 영국은 주식등을 매도하고 30일 이내에 다시 매입하는 거래의 경우 의도적인 세금회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자본손실을 허용하지 않음
  
-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로 전환할 경우 우리나라도 조세회피적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일시적 가격 변동에 따라 피해를 보는 선의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세회피적 거래를 방지하는 조치는 필요할 것임
  - 다만 단기적으로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도입만으로도 국세청 및 금융기관의 행정적인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조세회피적 거래를 파악하는 것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인프라가 정착되는 시점에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라.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의 경우 현재 코스피 0.1%, 코스닥 0.25%, 코넥스 0.1%, 기타 0.45%로 과세되고 있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2023년 이후에는 코스피 0%, 코스

닥 0.15%, 코넥스 0.1%, 기타 0.3%로 과세될 예정임

- 조사대상국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음
  - 영국은 주식 매수자에게 0.5%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고 독일은 10억유로를 초과하는 주식 매입가액에 대해 금융거래세를 2021년까지 도입할 예정임
  -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거래세는 없지만 뉴욕주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음
  
- 주식 양도차익 과세 시 증권거래세는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증권거래세는 세수 확보 및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성도 있음
  - 이론적으로 볼 때 증권거래세의 부과는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금융거래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증권거래세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시장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증권거래세 인하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이상엽(2020)의 연구에 따르면, KOSPI 시장의 경우 증권거래세 인하가 거래활동(거래량, 거래대금, 회전율)에 미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증권거래세 인하 이후 변동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KOSDAQ 시장의 경우 증권거래세 인하는 장기적으로 거래활동(거래대금, 거래량)과 변동성 모두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음<sup>350)351)</sup>
    - 즉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한 거래량 감소는 확인되지 않았고 장기적으로 변동성을 확대시킨 것으로 나타났지만 KOSDAQ 시장의 변동성이 KOSPI 시장의 변동성에 비해 더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음
  - 증권거래세의 부과는 거래세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

350) 이상엽(2020), pp. 124~125

351) 2019년 6월 증권거래세 인하가 시장의 양적·질적 유동성과 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KOSPI200은 NIKKEI225를 통제그룹으로, KOSDAQ은 JASDAQ을 통제그룹으로 하고 증권거래세 인하 전후 3개월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DID(Difference-in Difference) 방법론을 이용하였음

에 대비한 세원을 자본시장에서 직접 확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로 야기된 사회적 비용은 금융시장 참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음

- 거래세의 폐지는 진입장벽을 없앴으로써 오히려 단기투자를 유인할 우려도 있음
- 자본이득세와 거래세의 부과는 이중과세라는 견해가 있으나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과세목적 및 과세대상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렵고 두 가지가 적절하게 과세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김갑래,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6.
- 김갑래·황세운, 『미국·일본의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과세체계 분석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9.
- 김유찬·이유향,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김재철, 「영국 개인저축계좌(ISA) 현황과 시사점」, 『유럽시장금융포커스』, 2013년 가을/겨울호, 자본시장연구원, 2013.
- 박명호·기은선·정희선, 『주요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2008.
- 오윤, 「자본이득과세제도 개선방안」, 『조세학술논집』, 2012, pp. 171~221.
- 이상엽, 「자본이득 과세 현황 및 개선 방향」, 『한국증권학회 증권사랑방 2017년 제2차 자료집』, 2017, pp. 1~43
- \_\_\_\_\_, 「증권거래세 인하의 시장 유동성 및 변동성에 대한 효과 분석」, 『세무와회계저널』, 제21권 제6호, 2020, pp. 123~154
- 이상엽·오종문·기은선, 『자본이득 과세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이상엽·오종문·윤선중, 『자본이득과세제도 개선과제 및 단계적 이행체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이신희, 「자본이득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2014.
- 정원석·마지혜, 「영국의 개인저축계좌 다변화와 시사점」, 『KIRI리포트 포커스 제416호』, 보험연구원, 2017.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1권, 2019.

- \_\_\_\_\_,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2권, 2020.
- 홍범교·김진수,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0.
- 홍범교·송은주·마정화, 『주요국의 채권 자본이득 과세제도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2.
- 홍범교·이상엽,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황세운, 「일본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세제의 특성 및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2019-13호, 자본시장연구원, 2019
- 植松利夫 編著, 『日本の税制』, 財経詳報社, 2019.
- Deubner Verlag GmbH & Co. KG, “Investmentsteuerreform 2018: Was ändert sich?,” 2018.
- IRS,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Pub 550, 2019.
- \_\_\_\_\_, “Sales and Other Dispositions of Assets,” Pub 544, 2019.
- KPMG, “Taxation of Fund in Germany from 2018,” 2018.
- Tax Foundation, “2020 Tax Brackets,” 2019.
- Wolfgang Kessler and Rolf Eicke, “Welcome to the German Dual Income Tax,” 2007, pp. 837~841.
- 경향비즈 이코노미, [http://biz.khan.co.kr/khan\\_art\\_list.html?category=economy](http://biz.khan.co.kr/khan_art_list.html?category=economy)
-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http://dis.kofia.or.kr/websquare/index.jsp?w2xPath=/wq/main/main.xml#!>
- 삼일아이닷컴, <http://www.samili.com>
- 한국증권학회, <http://www.iksa.or.kr/modules/doc/index.php?doc=intro>
- 독일 연방법무부, [https://www.bundesjustizamt.de/DE/Home/homepage\\_node.html](https://www.bundesjustizamt.de/DE/Home/homepage_node.html)
- 독일 연방재무부, <https://esth.bundesfinanzministerium.de/>
- 독일 투자자산관리협회(BVI), <https://www.bvi.de/>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  
 영국 법령정보센터, <https://www.legislation.gov.uk/>  
 영국 벤처캐피탈, <https://www.syndicateroom.com/>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  
 일본 금융청, <https://www.fsa.go.jp/>  
 bibukurse(독일 현지 세무시험준비 사이트), <https://www.bibukurse.de/>  
 Brokervergleich, <https://www.brokervergleich.de/>  
 Deloitte, [https://www2.deloitte.com/global/en.html?icid=site\\_selector\\_global](https://www2.deloitte.com/global/en.html?icid=site_selector_global)  
 DEUBNER STEUERN & PRAXIS, <https://www.deubner-steuern.de>  
 EY, [https://www.ey.com/en\\_gl](https://www.ey.com/en_gl)  
 Finanztip, <https://www.finanztip.de>  
 HMRC(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  
 IBFD, <https://research.ibfd.org/>  
 Investopedia, <https://www.investopedia.com/>  
 Justizportal Baden-Württemberg(독일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 법학데이터베이스),  
[https://lrbw.juris.de/cgi-bin/laender\\_rechtsprechung/list.py?Gericht=bw&Art=en](https://lrbw.juris.de/cgi-bin/laender_rechtsprechung/list.py?Gericht=bw&Art=en)  
 KPMG, <https://home.kpmg/xx/en/home.html>  
 NewYork State, <https://www.tax.ny.gov/>  
 NS&I(영국 국가저축은행), <https://www.nsandi.com>  
 PwC WWTS, <https://taxsummaries.pwc.com/>  
 SMBC日興証券, <https://www.smbcnikko.co.jp/>  
 Steuertipps, <https://www.steuertipps.de>  
 Tax Foundation, <https://taxfoundation.org/>  
 WWKN(독일현지 세무자문회사), <https://wwkn.de/>  
 IBFD, <https://research.ibfd.org/#>  
 Onvista Bank, <https://www.onvista-bank.de/>  
 SMBC日興証券, <https://www.smbcnikko.co.jp/>

세법연구 20-08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현황 및 쟁점

---

발 행 2020년 12월 31일  
저 자 이상엽·송은주·서동연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쇄 거목정보산업(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ISBN 979-11-6655-055-3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